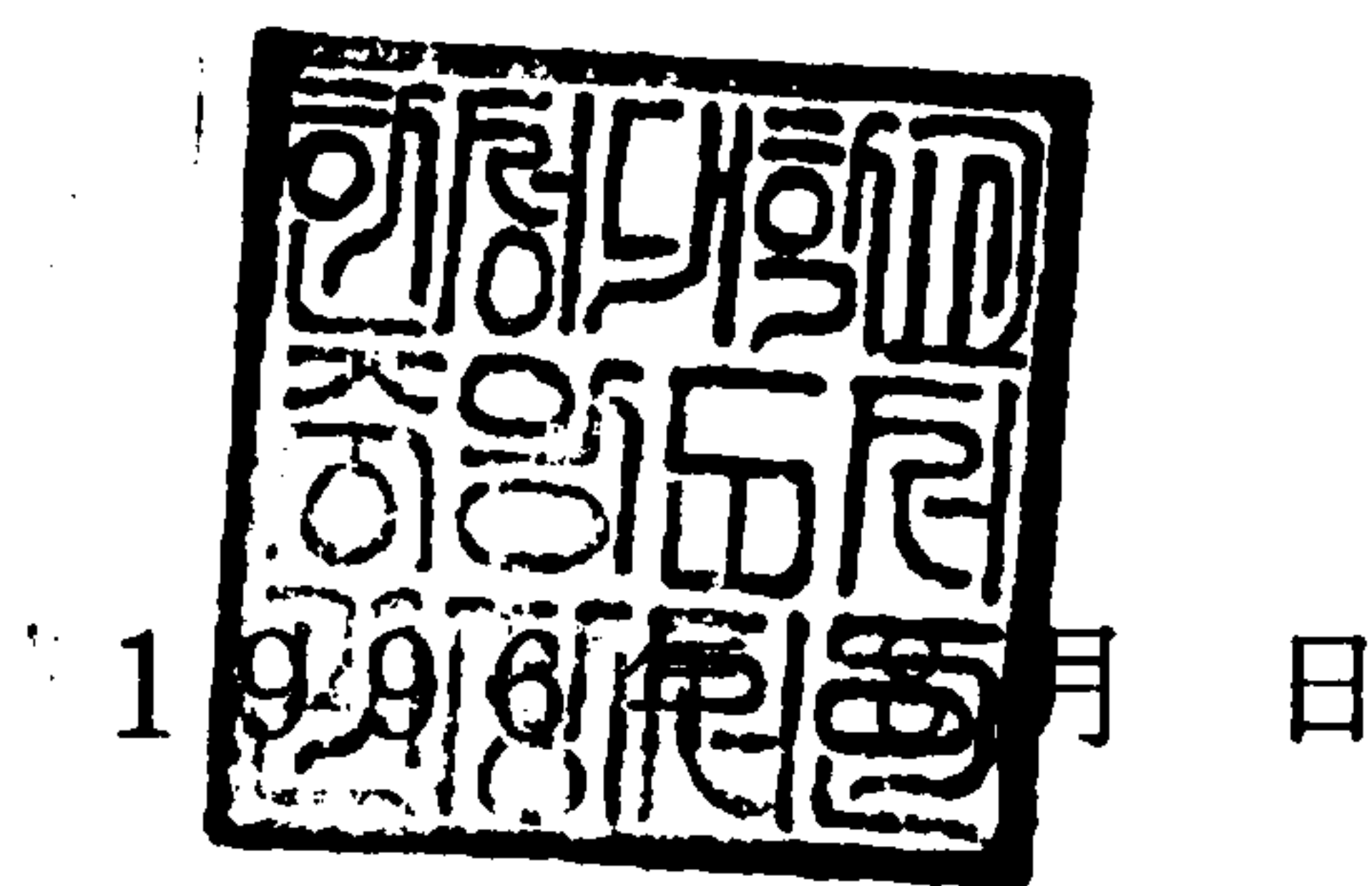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鄭 周 澤

韓國의 麻藥類 統制政策에 대한 研究
A Study On Drug Control Policies in Korea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行 政 學 科

一 般 行 政 專 攻

高 性 均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鄭 周 澤

韓國의 痲藥類 統制政策에 대한 研究
A Study On Drug Control Policies in Korea

위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6年 8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行 政 學 科

一 般 行 政 專 攻

高 性 均

高性均의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 함

1996年 月 日

審査 委員長 印

審査 委員 印

審査 委員 印

目 次

第1章 序 論	1
第1節 研究의 目的	1
第2節 研究의 方法 및 範圍	2
第2章 麻藥類의 概念 및 種類別 特性	4
第1節 麻藥類의 概念	4
第2節 麻藥類의 種類 및 特性	5
1.麻藥의 一般的 特性	6
2.麻藥法上의 主要 藥物	9
3.大麻管理法上의 主要藥物	20
4.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上의 主要 藥物	23
5.흡입용 환각물질	29
第3章 麻藥類 濫用의 實態와 展望	31
第1節 麻藥類 濫用의 時期別 特性	31
1.解放以前	31
2. 解放 以後	32
3. 1960年代	33
4.1970年代	34

5.1980年代	35
6.1990年代	36
第2節 麻藥類 濫用의 實態	37
第3節 麻藥類 濫用의 向後 展望	40
 第4章 麻藥類 統制政策의 現況	 43
第1節 麻藥類 統制의 規制法規	43
1. 刑 法	43
2. 麻 藥 法	44
3. 大麻 管理法	46
4.向精神性 醫藥品 管理法	47
5. 有害化學物質管理法	48
第2節 麻藥類規制 國際協力	49
1. 概 設	49
2.麻藥類規制 國際協約	51
3.麻藥類統制 國際機構	55
第3節 統制機關別 統制政策 現況	62
1. 概 說	62
2.機關別 麻藥類 統制政策	63
 第5章 麻藥類 統制政策의 評價및改善方案	 73
第1節 統制政策에 對한 認識	73

1. 麻藥類 問題에 대한 認識의 變化	73
2. 統制政策의 當爲性	76
3. 統制政策의 變貌	81
第2節 麻藥類 統制政策의 基本方向	82
第3節 統制政策의 問題點에 대한 改善方案	84
1. 藥物規制 法規上の 問題點	84
2. 政策施行上 拘束의 實效性 問題點	87
3. 統制機關의 業務領域 擴大問題	88
4. 麻藥類 濫用豫防 教育活動의 強化	90
5. 治療와 再活對策 問題	91
6. 國際協力 強化問題	93
第6章 結 論	95
參 考 文 獻	100
Abstract	103

表 目 次

〈표 3-1〉	주요 국가의 마약계수(1993년 기준)	37
〈표 3-2〉	마약류 사범의 연도별 남용실태	38
〈표 4-1〉	형법상 아편에 관한 죄의 형벌	44
〈표 4-2〉	마약법상의 형벌	46
〈표 4-3〉	대마관리법상의 형벌	47
〈표 4-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형벌	48
〈표 4-5〉	마약류 관련 국제기구	61
〈표 4-6〉	보건복지부 마약관리과의 대책	65

第1章 序 論

第1節 研究의 目的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마약문제는 크게 사회문제화되지는 않았었다. 1960년대에 일부 폭력배나 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사용계층이 한정되어 있었고, 1970년대에는 일부 연예인들이 대마초 흡연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정도였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와서는 청소년층에서 신나, 공업용 본드, 부탄가스 등의 흡입으로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했으며 더불어 일본으로 밀수출되던 일명 히로뽕이라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탈선 해외 유학생들에 의해 코카인, LSD, 아편 등이 반입되고 있고, 사용되는 약물의 종류도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의 상습복용자가 40만~5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들의 재범비율이 50%를 넘는다는 통계다¹⁾.

마약류 사범에 대한 단속 통계를 보면, 수년간 보합세를 보이던 마약 사범이 90년에 1,215명이던 것이 91년에는 838명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92년에는 949명으로 전년대비 12.2% 증가하였고, 93년에는 3,364명이 적발되어 전년대비 254.4%의 대폭적인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²⁾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마약사범이 증가와 마약류의 확산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고, 또한 마약류 남용자들

1) 조선일보, 1994.5.23.

2)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1993, p.36, p.42.

에 대한 치료시설의 확충과 재활문제 및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대단히 많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마약류범죄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마약류 사범에 대한 정책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第2節 研究의 方法 및 範圍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면서 세계 각국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개인적인 신체적, 정신적 파괴와 사회적인 문제 발생을 방지하고, 이에 대처하는 국가경제적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통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마약류범죄가 발생빈도가 적었고 마약류에 의한 범죄가 그리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도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통제정책을 실시하지 못하고 미온적인 처방으로 일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 연구는 한국의 마약류 문제의 실태와 그 통제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의 효과적인 마약류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자에 대한 현황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특정의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마약류사범을 연구자 자신이 직접 접하여 조사할 수 있는 기회는 차단되어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주로 문헌조사에 의존하였으며, 마약류 사범에 대한 통계자료는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마약류 통제정

책의 현황과 발전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또한 국가안전기획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등 마약류범죄와 관련된 기관들의 공개자료와 언론기관의 보도자료 등의 자료에 주로 의존하였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책 등도 대마약업무 실무종사자, 관련 학자 또는 연구단체들이 제시한 방안들을 중점적으로 참고하여 대책을 제시하였으며 국제 학술지와 미국,일본의 학자, 실무자들에 의해 제시된 방안들도 참고하였다. 본 연구의 실태분석에 있어서는 대검 마약과의 통계자료를 주로 이용하였고, 세계 각국의 대마약정책과 국제기구 및 국제 마약류 관련 조약에 관해서는 관련 문헌들과 INCB 보고서³⁾ 등을 주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마약류 통제정책에 관한 본 연구는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등 마약류관계법 위반사범과 일부이기는 하지만 마약류의 오·남용의 상태에서 행한 범죄행위와 그에 대한 대처방안, 국제조직범죄의 국내침투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방안 등도 연구대상의 범위에 포함했다.

본 논문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 제2장에서는 마약류의 개념, 종류 및 특성, 독해 등을 개관하고,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마약류 남용의 시기별 특성, 실태, 향후전망 등을 다루었다. 제4장에서는 마약류규제 관련법규를 중심으로 한 통제정책의 실태와 각 통제기관의 정책 현황, 마약류규제 국제협력 등 현행 마약류 통제정책의 현황 등을 다루었고, 제5장에서는 마약류 통제정책의 기본방향과 통제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대책방안을 논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맺는 말」로써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 정리 하였다.

3)INCB 보고서 : Report of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r Board.

第2章 麻藥類의 概念 및 種類別 特性

第1節 麻藥類의 概念

고유한 의미에서의 마약이란 앵속(양귀비), 아편 및 그 제제, 그리고 이와 유사한 약리작용 및 중독증상이 있는 약물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마약이라는 용어는 고유한 의미의 마약 뿐만 아니라 향정신성물질과 대마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넓은 의미로서의 마약은 마약류 또는 약물⁴⁾이라는 용어로 표현해야 적절한 표현이 될 것이며, 이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는 ‘마약류’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에 의하면 마약류, 즉 약물이란 (1)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게 나타나고 (2)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3) 금단증상 등이 나타나고 (4) 그 약물에 의한 피해가 사용자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되어 있다.⁵⁾

4) 李銀模, “약물범죄에 관한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1), pp.7-8. 약물(Drug)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 입장에서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어떤물질’을 의미하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음식 이외의 물질로써 그 화학적 성질에 의하여 생물의 기관에 구조적 또는 기능적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약리학자들은 ‘그것이 몸에 흡수될 때 기관의 구조 또는 작용을 변화시키는 물질’이라고 한다. 그러나 약물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그 물질의 특성이나 그것이 기관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점보다는 그 물질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대검찰청, 『전게서』, 1993, p.139.

일반적으로 마약류 남용의 해독으로는 의존성, 내성, 금단증상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개인에 대한 병리작용 만을 일으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약류 남용자나 비남용자를 막론하고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개인적으로 마약류 남용은 근로의욕을 상실케 하여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며 가정은 황폐화되기 쉽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마약류 남용자가 증가할 수록 근로의욕의 상실로 인한 생산성의 저하와 이에 대처하기 위한 비용증가를 가져와 국가경제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마약류 남용이 범죄, 특히 강력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쳐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면 마약류, 즉 약물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러나 무엇이 약물이고 무엇이 약물이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없다. 어떤 학자들은 ‘약물남용’이라는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며 이 용어를 ‘화학물질남용 또는 물질남용(chemical or substance abuse)’이 더 나은 용어라고 주장 하기도 하고, ‘약물’이라는 용어의 부정확성이 심각한 사회적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적 차원에서 마약류를 마약법에 근거한 천연마약과 합성마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기초한 향정신성물질 그리고 대마관리법에 의한 대마로 구분하고 있다.

第2節 麻藥類의 種類 및 特性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를 규제법규상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하고 있고, 국제협약에서는 마약(Narcotic Drug)과 향정신성물질

(Psycotropic Substances)로 구분하고 있는데, 1961년 협약⁶⁾에서는 유기물질에서 추출되는 마약류 및 그와 유사한 작용을 하는 물질로 ‘마약’을 규정하고 있으며, 1971년 협약⁷⁾에서는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 ‘향정신성물질’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규제대상인 주요약물 및 최근 청소년층에서 남용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흡입용 환각물질의 종류와 특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麻藥의 一般的 特性

가. 禁斷症狀(Withdrawal Syndrome)

알콜중독자가 알콜기운이 떨어지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을 떨면서 술을 찾아 헤매는 현상을 보이듯이 마약중독환자가 복용하던 마약을 끊게 되면 신체적, 생리적으로 특이한 증상을 나타내는데, 이를 금단증상이라 한다. 금단증상은 약물의 복용기간 및 복용량과 비례하여 나타나는데, 복용량이 많을수록 그 증상은 심해진다. 또한 금단증상은 여러가지 징후로 나타나는데, 약물을 복용한 지 수 시간 후부터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하루 내지 이틀 후에는 그 정점에 이르게 된다. 처음에는 하품, 눈물, 콧물 등이 흐르며 열이 난다. 그리고 공연한 불안감 등으로 수면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여 자다깨다 한다. 깨어있을 때에 억제제나

6)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N.Y : U.N 1961).

7) 「Convention on Psycotropic Substances」 (N.Y : U.N 1971)

홍분제를 복용시 동공이 수축 또는 확장되고 다리에 극심한 고통을 느껴 결국 이러한 고통은 전신통증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단계가 지나면 불면증, 현기증, 구역질을 느끼고 설사와 열이 나며 혈압이 상승하며 식욕을 잃고 탈수현상과 체중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금단증상은 약물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다르고, 금단증상 기간 중에는 마약의 내성은 급격히 소멸되는데, 이 기간 중에 해당 약물을 투여하면 금단증상은 곧 멈추게 된다.

나.마약의 耐性(Drug Tolerance)

마약이 사용횟수에 비례하여 동일한 사용량으로는 이전에 경험했던 도취감을 느낄수 없게 되는데, 이는 인체내에 마약에 대한 내성이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아편 또는 헤로인이나 몰핀 등 아편제제들은 높은 수준의 내성을 형성하는데 비하여 알콜, 바르비탈염제제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내성을 생성 시킨다. 이러한 마약의 내성은 마약남용자로 하여금 극도의 마약 의존성을 갖게하여 사용자를 점점 마약중독상태에 이르게 하고 결국 폐인으로 만들어 사망에 이르게 한다.

다.심리적 依存性

마약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높은 도취감을 얻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마음의 고통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심리에 작용하는 효과를 얻기 위하여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심리적 의존성이다. 이 심리적 의존성은 남

용자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금단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마약이라 할지라도 심리적 의존성은 강하게 작용하여 마약을 탐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라. 환각제의 二重性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약물은 어느 것이나 중추신경을 흥분시키거나 억제시키든 두 작용 중 한가지 작용만을 일으키는데 반하여 환각제는 이 두가지 작용을 다 나타낸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흥분작용을 나타내거나 억제작용을 일으키며, 어떤 경우는 흥분과 억제작용이 동시에 나타나 예기치 못한 각종 변칙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근래에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천사의 가루(Angel dust)’라고 불리는 PCP라는 환각물질을 복용하게 되면 흥분과 억제감정이 오락가락하여 충동적이고 투쟁적인 행동을 보이고, 예기치 못한 행위를 나타내어 간혹 투신, 익사, 분신, 폭력 등의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인식장애와 망상적인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마. 再現현상(Flashback)

흔히 환각제를 복용하면 환각현상이 나타나는데, 환각현상은 대개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을 유발하여 복용자로 하여금 재차 환각제 복용을 꺼리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환각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상태와 전혀 다른 감각을 맛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기할 만한 현상은 물체의 색깔

을 귀로 느끼고, 맛을 보고, 소리를 눈으로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⁸⁾ 그리고 환각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종종 재현현상(Flashback)을 경험하게 되는데, 재현현상은 과거 환각제 복용 당시에 경험했던 상황이 환각제를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환각상태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즉 재현현상은 환각제를 중단한지 한주일, 한달, 일년 또는 수년이 지난후에도 환각상태가 나타나기도 하며, 이때 나타나는 상황은 과거 환각제 복용상태의 경험에서 나타났던 상황과 연관되어 관계를 맺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수초, 수분 또는 수시간 동안 지속될 수도 있으며, 복용 당시와 같이 즐거움을 맛볼 수도 있지만, 대개 공포와 두려움을 자아내거나 심한 감정억제를 일으켜 자살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심한 비인격적 행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현대의학도 이런 'Flashback'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를 확실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麻藥法上의 주요 藥物

마약은 마약원료인 생약으로 추출되는 천연마약과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합성마약으로 분류된다.

천연마약에는 아편계와 코카계가 있고, 합성마약은 페치딘계와 아미노부텐계, 그리고 벤조몰판계 등으로 구분한다.

천연마약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아편계 약물로, 아편과 몰핀을 비롯하여 헤로인, 코데인, 테바인, 옥시코돈, 하이드로몰폰 등이 있고,

8) 주왕기 「본드,마리화나,필로폰」, (박영출판사),1995, p.23.

코카게 약불로는 코카인, 크랙이 있다.

아편은 18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주로 통증완화와 이질 등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쓰여졌으나 18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도취감이나 편안한 마음을 얻기 위해 이용되었다. 이러한 아편이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하게 된 이유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으나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1805년 독일의 한 화학자가 아편과 몰핀을 분리하는데 성공한 사실이다.

몰핀은 마약중독을 치료해주는 약물로서 선호되었지만 주사기 발명과 함께 중독자가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의 남북전쟁 기간 중에는 부상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아편이나 몰핀이 다량으로 남용되었으며 이들의 중독현상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전쟁후에도 아편과 몰핀의 남용은 급속히 증가되었으며, 이때까지도 이를 규제하는 법규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약중독의 증가현상을 초래한 결정적인 원인은 헤로인의 발견이다. 헤로인을 상업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1898년 독일에서이다. 헤로인은 처음에 아편과 몰핀의 만성중독을 치료해 주는 약물로 인정되었고 그 자체는 중독성이 없는 약물로 생각했다. 그러나 헤로인은 몰핀에 비해 수 배나 강한 약효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사용방법도 간편하여 남용자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1914년 미국이 경우, 평균 400명중 1명이 헤로인 중독자였고 이는 약 20만명에 해당하는 숫자였다고 한다.⁹⁾

코카게 약물은 코카관목의 잎에서 채취되는 코카인과 코카인 염화물을 가공하여 만들어지는 크랙이 있는데, 코카관목은 볼리비아, 페루 등 남

9) 李銀模, 「전게서」, p.8.

미 서쪽 산간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재배되어 왔다.

크랙(Crack)은 농축 코카인으로 1985년 이래 미국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약물중 하나이다. 그 사용방법이 간단하고 다른 마약류보다 적은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남용자들이 많다.

가.아편(Opium)

아편은 앵속의 씨앗껍질에서 얻어지는 물질로서, 온대 및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양귀비계 식물이다. 아편성분을 함유하는 앵속은 기원전 300년경부터 지중해 해안지역에서 재배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 : 태국, 미얀마, 라오스 국경지역)’ 및 ‘황금의 초승달지대(Golden Crescent :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국경지역)’를 중심으로 대량 재배되고 있으며, 거의 세계 전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다.

아편은 파이프에 의한 흡연으로 남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불에 탈때 향기를 풍기며, 흡연자는 이 향기를 들어마심으로써 원하는 효과를 얻게되는 것이다. 아편은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완화시켜 주며 졸음이 오는 듯한 몽롱한 상태에서 편안함과 활활감을 느끼게 한다. 초보적인 남용의 경우에 비교적 강한 황홀감과 즐거운 기분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약효는 그 남용이 계속됨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지게 되며 그와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몇배의 흡연을 필요로 하게 되며, 아울러 남용횟수도 증가하여 결국 매일 아편을 남용하는 상태에 까지 이르게 된다.

아편중독자가 아편을 중단하는 경우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생리적인 균형의 파괴를 초래하기 때문에 적어도 매 24시간마다 이를 다시 복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편을 구하기 위한 범죄행위도 서슴치 않게 된다. 아편남용이 계속되면서 남용자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성격은 매우 신경질적으로 변하며, 식욕과 성욕을 상실하고, 메스꺼움, 구토, 변비, 동공수축, 홍조, 호흡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통상적으로 아편의 약효가 사라진 후 약 72시간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기간이며 몸이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수 주일 또는 수 개월이 걸리게 된다.

나. 몰핀(Morphine)

몰핀은 아편의 중심적 알칼로이드로써 1805년 독일 화학자 ‘제르튀르너’에 의해 분리되었다.

몰핀은 통증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약물의 하나로 코데인과 헤로인의 제조원료로도 사용되고, 용액, 분말, 또는 정제의 형태로 대부분의 알칼로이드와 마찬가지로 매우 쓴 맛을 가지고 있다. 몰핀은 냄새가 없으며 오래될수록 검은색으로 변하고, 비교적 단순한 화학적 과정을 통하여 얻어지는데, 아편에 물과 석회를 넣고 끓인 후 염화암모늄을 가하여 침전시키는 방법으로 얻어진다. 이때 사용한 아편의 약 10분의 1 정도 무게의 몰핀이 산출된다고 하며, 중독자들은 정맥주사의 방법으로 이를 남용하고 있다.

몰핀을 복용하면 도취작용을 하여 복용자로 하여금 편안함과 즐거움

을 느끼게 하고 잠도 잘 오게 해준다. 처음 몰핀이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은 몰핀을 아편중독 치료제로 생각했고, 또한 의사들도 피하주사 방법에 의한 몰핀의 사용은 중독성이 없다고 믿었다. 몰핀은 아편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고 일정한 화학적 과정을 거쳐 추출한 물질로서 아편에 비해 그 중독성이 훨씬 강하다.

주된 중독증상은 호흡억제 작용으로 메스꺼움, 구토, 발한, 변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몰핀은 기본적으로 아편이나 헤로인과 같은 약효를 가지나, 약효의 강도면에서는 헤로인보다 약하다. 그러나 몰핀은 내성과 의존성이 매우 빠르게 형성된다. 몰핀 중독자들은 보통 하루에 3회 사용하는데, 1회 사용량은 보통 10-20mg 정도이며 사람에 따라서는 하루 120mg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번에 많은 량의 몰핀을 주사하면 호흡장애를 일으켜 사망하게 된다.

다.헤로인(Heroin)

헤로인은 몰핀으로 얻어지는 합성물이다. 헤로인은 향기가 결정화된 분말로써 얻어지며 매우 쓴 맛을 낸다. 그리고 사용되는 혼합물과 화학적 제조과정의 차이에 따라 여러가지 색깔을 띠며 물에 잘 녹는다.

헤로인은 코로 흡입하거나 주사 또는 흡연의 방법으로 남용되는데, 코로 흡입하는 방법은 약효의 약 30-50% 정도 밖에 취하지 못한다. 그래서 남용자들은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주사의 방법을 택하게 되며, 그 중에서도 피하주사 방법보다 그 약효가 강하게 작용하는 정맥주사의 방법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

헤로인의 일반적 약리작용은 몰핀과 비슷하나 약효는 몰핀에 비해 수배나 더 강하고, 내성이나 중독성도 몰핀에 비해 빠르고 더 위험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헤로인의 약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계에서 느끼는 것은 쾌감의 쇄도(rush)이다. 헤로인을 정맥에 주사하면, 신경계통이 약물에 대하여 격렬하게 반응하는 데에서 오는 쾌감의 쇄도를 경험하게 된다. 두번째 단계는 졸음의 단계(nods)로 이어진다. 이 단계에서 남용자는 완만한 상태에서 도취감이나 희열을 느끼게 된다. 피로감, 긴장감, 걱정 등은 사라지고 무력감이나 열등감도 편안한 만족감으로 대치된다.¹⁰⁾ 헤로인은 그밖에도 여러가지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눈동자 수축, 변비, 호흡장애, 고통이나 배고픔에 대한 무감각, 신경이나 내분비 계통을 비롯한 여러 기관을 퇴화시키며, 심한 경우에는 사망을 가져온다. 또한 태아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산모가 헤로인을 남용하는 경우, 태아에게 그 약물에 대한 신체적 의존성을 발생시키게 한다.

라.코데인(Codeine)

코데인은 메틸몰핀이라고 불리는 아편 알칼로이드 일종이다. 코데인은 의학적으로 수면을 촉진 하고 기침을 완화시키며 통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데, 그 약효의 강도가 몰핀의 약 6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마약남용자들이 즐겨 남용하는 약물은 아니다. 그러나 이 약

10) 김상희, 「마약류 통제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p.34.

물은 어느 마약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신체적 의존성과 금단증상을 수반한다. 코데인은 몰핀이나 헤로인의 중독을 치료할 때 대체 마약으로 대부분 사용된다.

마.테바인(Thebaine)

테바인은 양귀비의 다른 종류, 즉 *Papaver Bracteatum*에 주로 함유되어 있는 알칼로이드이다. 화학적으로 코데인이나 몰핀과 유사하나 테바인은 진정효과 보다는 흥분효과를 강하게 나타낸다.

테바인의 남용 초기에는 불쾌감, 졸음, 시력감퇴, 생리작용 감퇴 변비 등을 일으키고, 과량 남용시는 구토, 호흡억제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계속 남용하면 의존성과 내성이 생긴다.

테바인은 의학적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하이드로코돈, 옥시코돈, 옥시몰론, 날록손 및 벤틀리의 합성물로 전환되어 사용된다.

바.옥시코돈(Oxycodone)

옥시코돈은 테바인의 합성으로 얻어진다. 코데인과 유사한 마약이지만 약효는 코데인보다 강하고 의존성도 높다. 이 약물은 중추신경계를 억제시키는 진통작용을 하며 강한 중독성이 있고, 증상으로는 보통 눈동자가 수축되고 분별력을 잃으며, 졸음, 호흡이 느려지는 증상 등이 나타난다.

사.하이드로몰폰(Hydromorphne)

하이드로몰폰은 헤로인에 이어 두번째로 오래된 마취성 진통제이다. 몰핀보다 도취성 지속시간은 짧으나 그 강도는 몇 배 높으며 안정작용도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정제는 액상의 것보다 도취성이 강한데, 이를 녹여서 정맥주사로 투여된다.

아.코카인

코카계 약물은 코카관목의 잎에서 채취되는 코카인과 그 염화물을 가공하여 얻어지는 크랙이 있는데, 코카관목은 볼리비아와 페루 등 남미 서쪽 산간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재배되어 왔다. 코카가 유럽에 알려지게 된것은 1532년경 스페인이 잉카제국을 침공하면서 알려지게 되었고, 코카잎에 포함되어 있는 알칼로이드의 약 79-80%를 코카인이 차지하고 있다. 코카인은 무취의 솜털같은 흰색가루로서 물에는 녹지 않고 알콜이나 크로로포름 등에는 잘 녹는다. 코카인의 가장 일반적인 남용형태는 코의 점막을 통하여 흡입하는 것인데, 정맥주사와 흡연에 의해 남용되기도 한다.

코카인은 체내에서 급속히 분해되므로 약효가 매우 빠르고 일시적이다. 남용자들은 약효가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빈번히 남용하게 되고 그 양도 점차 증가하게 된다. 코카인은 대뇌를 흥분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써 어떤 결단을 빨리 내리게 하고 말을 빨리하게 만든다. 또한 자신감을 갖게하고 피곤함을 잊게하며 눈동자를 확장시키고 심장의 박

동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코카인은 과용하게 되면 지나치게 흥분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경련, 심장장애, 호흡곤란 등의 상태를 야기시킨다. 습관적으로 많은 양의 코카인을 남용하는 경우, 과대망상이나 정신착란 상태에 빠지기 쉽다.

코카인은 중추신경 흥분제로서 암페타민과 효능이 유사하며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약효는 암페타민과 비교해 볼 때 덜 강력하고 지속시간도 짧다. 다시 말해서 코카인으로 말미암아 폭력적인 범죄를 범할 가능성은 암페타민이나 알콜에 의한 경우보다 비교적 낮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습관적 코카인 남용자들은 정서적·도덕적 타락, 자기 통제능력 상실, 진실성·성실성 감소 등의 변화를 보이며 때로는 자해행위를 하기도 한다. 임산부가 코카인을 남용하게 되면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고 저능아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임신중에 코카인을 남용하는 경우 종종 태아는 염색체에 이상을 일으켜 선천적인 불구자로 태어나는 경우도 생긴다.

자.크랙(Crack)

크랙은 농축 코카인이라고도 하는데, 코카인 염화물에 암모니아나 베이킹소다 및 물을 가열하여 만든다. 그 모양이 작은 돌과 같은 결정체로 되며, 수연관을 이용한 흡연방법으로 남용된다.

크랙은 약효가 신속하게 퍼지고 강력하다. 이 약물은 코카인을 코로 흡입하는 경우보다 강한 약효를 나타내고 있다. 1985년 이래 미국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약물중 하나로 자리잡기 시작한 크랙은 그 남용방법이 간편함과 약효의 강렬함, 다른 약물보다 적은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남용자들이 많다. 그러나 약효의 지속시간은 매우 짧아서 약 10-15분 후에는 약효가 감소, 다시 복용하고 싶은 욕망을 갖게 한다. 그런 연유로 크랙은 그 중독성의 위험성이 코카인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그 효과를 오래 지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PCP, LSD, 헤로인 등의 약물과 함께 남용되기도 한다. 또한 미국에서는 여성들의 크랙 흡연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크랙은 사용후 수 주 내에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크랙에 함유된 코카인 성분의 도파민(Dopamine)이라는 물질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약물의 계속적인 남용에 의한 도파민의 증가, 감소의 반복은 결국 정신작용에 이상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크랙은 헤로인과는 달리 남용자들을 흥분시켜 난폭하게 만들고 과대망상에 사로잡히게 하여, 그 결과 종종 예기치 못한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기도 한다.

차.페치딘

합성마약은 페치딘계와 메사돈계로 나뉘지는데, 그 대표적인 약물이 페치딘과 메사돈이다.

페치딘은 화학적으로 몰핀과 다르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진통효과를 가져오는 점에 있어서는 몰핀과 유사하다. 이 약물은 심한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약물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물의 하나이며, 그 입수가 비교적 용의하기 때문에 의료직종에 종사하는자들에 의한 남용이 많다고 한다.

페치딘은 복용하거나 주사에 의한 방법으로 남용되는데, 그 약효는 진통작용 외에 진정작용이 있고 약 3-6시간 동안 지속된다. 증상으로는 졸립고 멍청해지며 호흡이 느려진다. 또한 다량의 남용은 경련 등을 일으키며, 계속적인 남용은 내성과 의존성을 발생시킨다. 현재 알려진 종류로는 페치딘, 펜타닐 등 23 여종에 이르고 있다.

카.메사돈(Methadone)

메사돈은 2차대전 중 몰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독일에서 합성된 약물이다. 그러나 독성이 강하여 그 당시에는 사용되지 않다가 1946년 이후 미국, 영국 등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메사돈은 화학적으로 몰핀과 헤로인과는 다르다. 그러나 효과면에서는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마약중독을 치료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메사돈의 약효는 지속시간이 몰핀보다 더 긴 24시간 동안 지속된다는 점에서 몰핀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헤로인 등의 중독치료에 있어서 하루 1회만 투여하고도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입으로 복용하여도 주사에 의한 투여 경우와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메사돈도 그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내성 및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발생시키며, 몰핀이나 헤로인에 비해 심하지는

않지만 금단증상도 나타난다. 메사돈계 종류로는 메사돈, 디피파논 등 22종이 알려져 있다.¹¹⁾

3.大癩管理法上の 主要藥物

가. 大 癩

대마는 중앙아시아의 파미르고원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고, 본래 섬유용으로 재배되었으나 오래전부터 도취감을 얻기 위한 약물로 남용되어 왔다. 대마초는 Cannabis Sativa Linne 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으며 북남미에서는 일반적으로 마리화나라고 불리고 있다. 대마초는 솟나무에는 매우 적은 양의 수지를 갖고 있고, 도취효과가 약하기 때문에 중요시되지 않으나, 암나무에는 수지가 비교적 풍부하게 생성되기 때문에 약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수지는 열대지방으로 갈수록 그 함량이 많아지고 도취력도 강해진다. 대마의 수지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 중 인체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THC(Tetrahydro-cannibnol)라는 물질이며, 이 물질의 작용에 의하여 도취,환각상태가 일어난다. 이 물질은 쉽게 화학적으로 합성되며, 이 합성된 물질은 대마와 비슷한 효과를 내고 있다. THC의 성분은 대마초의 각 부분에 따라 그 함량이 크게 다른데, 뿌리, 줄기, 큰 줄기, 씨 등에는 매우 적은 양 밖에 포함되지 않으나 가는 줄기, 잎 등에는 풍부한 양이 함유되어 있다.

대마초는 사용방법이 흡연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나, 입으로 먹는 방법이나 용액을 마시는 방법도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방의 약재

11) 부산지방검찰청, 「마약류 사범의 실태와 수사」, 1988, p.23.

로서 대마초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으나, 진통 및 경련 진정제로서 효능이 공식적인 문헌상에 나타난 것은 1939년부터이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다른 합성약물의 등장으로 의학적 용도의 사용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대마는 흥분, 억제의 두가지 작용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환각제로 분류된다. 대마의 효력은 남용자의 환경, 성격, 약물의 강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소량의 대마를 섭취한 경우에는 흥분제와 같은 효과를 가져와 초조감, 이완감을 수반한 꿈꾸는 듯한 느낌, 공복감, 단것을 먹고 싶은 느낌 등을 갖게 되며, 사고의 형성 및 표현의 변화와 함께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 등 오감에 변화를 가져온다. 많은 양을 남용할 경우에는 공중에 뜨는 듯한 느낌과 함께 빠른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며 사고 및 기억의 단절, 집중력 상실, 자아상실감, 영상의 왜곡, 환상, 환각 등이 나타난다. 또한 극도의 많은 양을 남용할 경우에는 중독성 정신이상 상태에 이르는 수도 있다. 지속적인 남용은 정신운동 및 내분비 기능의 장애, 면역능력 감소에 따른 저항력 저하가 일어날 수 있고 정신적 의존성이 생기며, 중독성 정신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대마를 남용하다 중단한 경우에는 각성제나 환각제인 LSD 등에서 볼 수 있는 재현현상이 나타나는 수가 있으며, 대마에 있어서 재현현상은 보통 남용 중단후 2-3일부터 2주일까지 기간중에 나타나지만 1년이 경과한 후에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나.마리화나

마리화나는 통상적으로 암대마초의 잎과 꽃이 달린 윗부분을 말려서 만든 담배와 유사한 물질을 지칭한다. 마리화나는 대마초를 가공하여 담배 자체로 말아 피우거나 파이프를 사용하여 흡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대마초의 용어 중 칸나비스와 마리화나는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으나, 엄격히 구분하면 칸나비스는 가공되지 않은 대마초를 지칭하며, 마리화나는 가공된 상태의 대마초를 가리킨다.

다.해쉬쉬

해쉬쉬는 대마초로부터 채취된 대마수지를 건조시키고 여러가지 형태로 제조된 것이다. 1Kg의 해쉬쉬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약 300Kg의 대마초를 처리해야 한다.

해쉬쉬의 주요 생산지는 파키스탄,레바논 등 중동지역이며, 이 지역 이외에도 동남아, 인도, 멕시코, 아프리카, 북미지역 등에서도 생산된다. 해쉬쉬의 밀거래는 주로 덩어리 형태로 거래가 되지만 때로는 분말상태로 거래되기도 한다. 해쉬쉬에는 2-10%의 THC가 함유되어 있다.

다.해쉬쉬 오일

해쉬쉬 오일은 대마초 또는 해쉬쉬로부터 증류공정 과정을 거쳐서 추출되기 때문에 THC 함량이 20%에 이르는 고도로 농축된 칸나비스 관련 마약이다. 1Kg의 해쉬쉬 오일은 약 3-6Kg의 대마수지(해쉬쉬)가 필요하며 대마초는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한다.

4.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上の 主要 藥物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하면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을 말한다. 즉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자극을 주어서 인간의 사고, 행동, 감정 등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약물을 총칭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 약리작용에 따라 각성제, 환각제, 억제제로 나눌 수 있다.

가. 각 성 제

각성제란 중추신경 흥분제로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암페타민(Amphetamine)류인데, 암페타민류에는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덱스암페타민 등이 있다. 그외에 각성제에 속하는 약물로는 펜메트라진, 메틸페니데이트 등이 있다.

암페타민류는 1887년 독일의 한 화학자에 의해서 합성되었고, 1932년에 의학계에 소개되었다. 이 약물은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 처음에는 천식이나 기관지 장애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이용되었고, 또한 수면병 치료와 식욕억제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암페타민은 교감신경을 자극함으로써 혈관의 수축과 혈압의 상승, 심장 박동수의 증감, 기관지의 확장, 눈동자의 확대, 혈당량과 근력의 증감 등을 가져온다. 이러한 작용에 의해 남용자는 황홀감을 느끼고, 배고픔을 잊으며 또한 정신력과 체력이 증진하는 느낌을 갖게된다. 그러나 때

로는 초조감을 느낀다든지 자극에 반응하여 쉽게 화를 낸다든지 하는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암페타민류는 정맥주사, 복용, 흡입, 상처에 바르는 방법 등에 의해 남용되며, 연구결과에 의하면 남용자의 89.8%가 정맥주사의 방법으로 남용되고 있고, 술이나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것도 4.6%, 코로 흡입하는 방법이 2.2%, 기타 방법이 3.4%로 나타나고 있다¹²⁾ 이와 같이 대부분의 남용자들이 정맥주사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이 방법이 가장 약효가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암페타민류는 메스암페타민이다. 1919년에 합성된 메스암페타민은 다른 암페타민류의 약물과 화학적 구조나 약리작용이 거의 유사하지만 다른 약물보다 약효의 발생이 신속하고 지속시간이 다소 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질적인 면에서도 다른 암페타민류보다 별 차이는 없으나,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은 더 강하기 때문에 남용 가능성이 큰 약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약물은 대부분 정맥주사로 투여되는데, 일시적으로 즉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활동성을 증가시키고 쾌감을 동반시키지만, 그 활동성은 거의 충동적인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볼때 혼란스러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단순작업의 능률은 높아지지만 반대로 조금만 복잡하다든지 정신집중을 요구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오히려 능률이 떨어지고 실수도 늘어난다. 이와 같이 메스암페타민의 영향하에서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이 저하된다.

메스암페타민의 남용을 초래하는 다른 요인으로는 식욕억제효과와 운

12) 이연수, “메스암페타민 사범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89), p.93.

운동선수들이 운동능력을 증진 시킨다고 느껴서 남용하는 경우이다. 이 약물은 식욕억제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남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운동선수들의 남용은 이 약물이 심장박동수의 증가와 혈압의 상승, 포도당 및 지방산의 증가를 가져오고 아울러 힘의 증가와 신경자극의 예민성이 나타나 남용자는 피로감을 덜 느끼게 되고 또 민감하게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남용자는 계속적으로 과도하게 몸을 움직이게 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약물은 신체적 의존성은 없으나 정신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이 약물은 그 부작용과 의존성 때문에 의학적 사용이 제한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우울증, 허탈상태, 신경쇠약, 저혈압, 비만증, 억제제 과용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한다.

메스암페타민을 반복해서 남용하게 되면 보통 3개월 정도에서 만성중독의 상태가 되고, 만성중독의 대부분은 중독성 정신장애를 겪게 되며 환각, 망상 등 정신분열과 유사한 정신장애가 나타난다. 그리고 만성중독의 후유증으로 재현현상(Flashback)이 일어난다.

기타 각성제로는 펜메트라진, 메틸페니데이트 등이 있는데, 이 약물들은 약리작용이나 남용상태에 있어서 다른 각성제와 비슷하다. 펜메트라진은 의학적으로 식욕억제제로만 사용되고 있고, 메틸페니데이트는 주로 어린이의 과행동증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

나. 환 각 제

환각제는 중추신경을 흥분,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여 활활감을 느끼게 하고 환각, 환상을 일으키게 하는 물질이다. LSD를 비롯하여 PCP, 메스칼린, DMT, DET 등이 있다.

LSD는 1938년 스위스 화학자 A.Hofman 박사에 의해 최초로 합성된 약물이다. LSD는 소량으로도 환각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약물이다. 보통 1회의 복용량(약 100마이크로그램)으로 6-12시간의 환각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1온스의 분량으로 3만회분의 복용량을 만들 수 있다. LSD는 보통 흰색가루이고 정제나 액체의 형태로 무색, 무미, 무취하다. LSD 복용후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동공확대, 안면홍조, 혈압상승, 체온저하, 발한, 현기증 및 급속심전 등을 들 수 있다.

LSD의 주요 특징은 감지능력과 판단력이 감소되고 일상적인 자기 통제력이 상실되며, 황홀감으로부터 공포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LSD를 남용하다 중단할 경우 금단증상으로 발전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습관적인 남용자에게는 내성이 형성된다.

LSD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현재 추측되는 부작용으로, 인체 혈액의 백혈구내의 염색체를 파괴하는 원인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염색체는 유전인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유전인자가 영향을 받을 경우 그 결합이 자식에게 유전될 위험성이 높다.

PCP(Phencyclidine)는 1950년대에 정맥주사용 마취 및 진통제로 연구되었던 약물로, 정신장애 치료제로서 사용되기도 했으나 그 효과에 비

해 청각장애 및 정신착란증을 일으키는 등 후유증이 커 사용이 통제되었다. PCP가 인체에 미치는 작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뇌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로 적당량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안정효과, 마취 및 진통효과를 나타내지만, 과다하게 복용할 경우에는 혼수상태, 경련 및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 약물의 남용자들은 비현실감, 환각 등 의식혼란을 경험하게 되며 사고 및 집중력의 장애가 자주 나타나고, 유산율이 증가하며 임신가능성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PCP 남용자들은 이 약물이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 보다는 이 약물 복용시 유발되는 이상행동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는 예가 많다는 것이다.

메스칼린(Mescaline)은 멕시코지방에서 자라는 페요트(Peyote)라는 선인장에 함유되어 있는 알칼로이드로서 코로 흡입하거나 주사 또는 음용의 방법으로 남용되는 환각물질이다.

DMT(Dimethyltryptamine)는 서인도제도나 남미 일부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의 열매에 함유된 지속시간이 짧은 환각제이다. DMT는 담배나 마리화나 등과 섞어 태울 때 나오는 연기를 들어마심으로써 환각상태에 도달하게 되며, 때로는 주사방법으로 남용되기도 한다.

DET(Diethylamine)는 DMT와 유사한 물질로 급속한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이다. 액체 또는 분말 형태로 거래되며, 제조공정이 복잡하다.

이 약물은 혈압상승을 유발시키고 뇌의 모세혈관을 파괴시킬 가능성이 큰 약물이다. 담배, 차 또는 마리화나에 DET액을 적서 말려서 피우거나 씹는 방법으로 남용된다.

다. 억제제

억제제는 바르비투레이트(Barbitturate)로 대표되는 진정수면제와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는 신경안정제로 나눌 수 있다.

진정수면제인 바르비투레이트는 신경활동, 평활근 및 심근에 상당한 억제효과를 미치고 광범위한 생화학적 기능을 억제시킬 수 있는 진정제이며, 신체적·정신적인 의존성과 내성을 생성시키는 약물로서, 불안감, 긴장, 불면증 등의 치료에 사용되었다. 이 약물은 소량으로도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하나 복용량이 증가하면서 약효는 안정, 수면단계를 거쳐 호흡곤란, 심장혈관 기능저하로 인한 죽음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 약물의 의존성은 일반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긴장감, 불안감 또는 무능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 발생한다. 이 약물에 쉽게 의존하는 자들은 수동적 공격성, 의존성의 인격을 지닌 사람들이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에서 발생한 전체 자살사건의 약 6%가 이 약물을 남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약물사고의 18%가 이 약물의 남용에 의한 것으로 매년 18,000명 정도가 이 약물 때문에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¹³⁾ 이 약물의 알콜중독과 유사하여 전반적으로 속도가 느리고 둔해지며, 기억력에 장애가 생기고 말하는 속도와 이해력이 느려지며 판단력의 결함과 감정의 변화가 심해진다. 금단증상으로는 불안, 쇠약, 심한 발한, 불면 등 가벼운 증상으로부터 대발작형 경련, 심장혈관 허탈 등과 같은 무거운 증상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13) 관세청, 「마약의 종류별 특성 및 밀수동향」, 1991, p.55.

신경안정제는 바르비튜레이트 이외에 널리 남용되는 억제제로서 그 작용에 있어서는 바르비튜레이트와 상당히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

신경안정제의 대표적인 약물인 벤조디아제핀은 불안에 대한 치료제로 주로 사용되나 긴장, 근육경련, 골격근 이완, 알콜중독증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다.

이 약물의 제제 중 어느종류는 억제능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약물로 인해 공격적 행동을 유발하기도 한다. 신경안정제는 바르비튜레이트와 마찬가지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과 내성을 발생시킨다. 매일 많은 양을 복용해 오던 사람이 갑자기 이를 중단하면 금단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 때는 불면증, 식욕부진, 운동성 초조증, 근육경련, 발한, 경련발작, 정신병적 행동 등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약물들은 쉽게 구입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약물의 남용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신경안정제를 알콜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약물이라 할 수 있다.

5. 흡입용 환각물질

흡입용 환각물질이란 그 향기를 흡입했을 때 남용자가 도취감을 느끼게 되는 휘발성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런 환각물질 사용은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 물질의 사용으로 야기되는 비정상적인 정신상태하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고, 또한 이러한 물질을 흡입한 경험이 있는 자들은 다

큰 약물을 남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격한 규제 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0년 제정된 유기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흡입용 환각물질을 단속하고 있다.

흡입용 환각물질에는 본드, 신나 등 탄화수소류와 에어졸, 스프레이 등 비탄화수소류 등이 있다.

第3章 麻藥類 濫用の 實態와 展望

第1節 麻藥類 濫用の 時期別 特性

1. 解放以前

우리나라에서 마약류에 대한 기록이 처음 나타난 것은 1611년 광해군 3년 아편의 약효 및 제법이 소개된 것이 최초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편 재배가 시작된 것은 구한말로 추정되고 있다.

구한말과 한일합방 당시의 아편 중독자 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아편이 사회문제가 되었다고 보여진다. 구한말 정부는 1905년에 아편의 흡식, 흡식기구의 수입, 앵속의 재배 등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단속을 하였고, 1912년에는 조선총독부가 아편을 단속하는 법령을 발표하여 단속하였다.¹⁴⁾ 그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일본은 1919년 6월에 조선아편취체령을 발표하여 앵속의 재배지역을 한정하고, 생산된 아편을 전부 수거하여 그 판매 대금을 아시아대륙 침공의 재원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25년 이래 조선총독부는 아편재배 면적을 확대하여 국내 소요량의 30배가 넘는 아편을 생산하게 하고 그것을 대만, 만주, 관동 등지에 수출하는 판매정책을 감행했다. 이와 같이 아편확대생산정책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아편흡식이 확산되는 하나의

14) 김상희, “마약류 통제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p.13.

원인이 되었고 그 결과 아편중독자가 생겨나게 되었다.

1890년대말 선교사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어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던 몰핀은 의사나 약사들의 무책임한 처방으로 1900년대 초부터 1920년대에 걸쳐 전국적으로 일시에 다수의 몰핀중독자가 발생하였으며, 헤로인 역시 같은 시기에 유입되어 몰핀과 같은 경로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2. 解放 以後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시기는 해방이후라고 볼 수 있는데, 해방과 더불어 중국에서 귀환하는 동포들 중에는 아편중독자가 많았으나 이 시기는 사회가 불안정 했고 정부가 강력한 행정력을 행사하지 못하던 시기로, 마약의 생산과 유통을 통제하는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하에서 마약중독자는 증가해 갔고, 더우기 사회혼란에 편승한 공산주의자들의 아편공세는 마약중독자를 격증시키는 커다란 요인이 되었다.

1946년 미군정청에서는 마약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정법령으로 마약단속규정을 제정하였고, 이에 의거하여 보건후생부 약무국이 마약단속업무를 시작하였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통제정책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그후 6.26전쟁 중에 부상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마약이 진통제로 남용되면서 마약중독자가 다수 발생하게 되고, 전쟁이후 남북분단과 사회혼란이 가중되면서 마약중독자가 계속 증가하였다. 보건사회부의 통계에 의하면 1954년에는 5만명까지 육

박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만 이 시기 중 주목 할 점은, 1952년에 보건부(보건복지부 전신)에 마약과가 신설되었으며, 1957년에는 국회에서 마약법이 제정되었다는 점이다.

3. 1960年代

1960년대초에는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어느정도 진정되고, 마약법 제정과 더불어 정부가 강력한 단속과 법적제재로 마약중독자의 수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월남에 군대가 파병되면서 군인과 군속에 의해 월남산 생아편이 대량으로 유입된 시기였다. 그리고 1965년에 일어난 '메사돈 파동'¹⁵⁾은 우리사회에 새로운 중독자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이 메사돈파동으로 인하여 1만명으로 추산되던 마약환자가 1965년에는 34,000명 정도로 격증하고, 1966년에는 36,000여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메사돈파동이 수습되고 정부의 강력한 행정력으로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면서 마약중독자 수는 점차 감소하여 1968년에는 20,000여명, 1969년에는 8,000명 정도로 줄어 들었다¹⁶⁾. 그리고 이 시기에는 바르비튜레이트를 위주로 한 비마약성 습관성 약물을 마약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이 당시 마약은 거의 만병통치약으로 일반인들에게 인식되어 신체적 질

15) 메사돈(Methadone)파동이란 화공약품으로 합성마약 메사돈을 제조하고, 이를 설파제,해열제,비타민제에 혼합하여 주사약으로 시판으로써 큰 사회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다. 일부 약덕 제조업자들이 합성마약 메사돈을 비밀리에 합성하여 보통약품에 혼합하여 제조,판매 하였는데 마약중독자들은 물론 마약 남용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이러한 약품을 사용하여 자신도 모르게 중독자가 되었다.

16) 김상희 『전계논문』, p.17.

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다가 중독되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했다¹⁷⁾).

4.1970年代

1960년대말부터 미군 기지촌을 중심으로 퍼지던 마리화나 흡연이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당시 사회에 불만이 많던 젊은층에서 일종의 반항적 의미로 받아들여 지면서 마리화나 흡연이 대학생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 마리화나 흡연은 1965년에 주한미군들 사이에 유행하다가 1967년부터 기지촌을 중심으로 보급되었으나, 정부는 이 마리화나 흡연에 대한 단속할 마땅한 법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서 단속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1970년 8월에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을 제정하여 단속을 했지만 마리화나 흡연은 여전히 증가추세를 보여 1975년에는 각계각층에 침투하게 되었다. 그 당시 마리화나는 'happy smoke'라는 이름으로 유통되었는데 연예인, 대학생, 심지어 여대생, 여고생들까지 이 마리화나를 피우고 있음이 밝혀져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 대마초가 전국적으로 만연된 몇가지 이유로는, 첫째 대마초의 원료인 대마가 섬유용 특용작물로써 그 재배가 자유롭고, 또한 전국 야산에 자생하는 식물이었기 때문이며, 둘째 제조방법이 용이하고 효력이 다른 마약과 흡사하다. 셋째 가격이 저렴하고 특정한 흡연기구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한편 이 시기는 밀수범들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루면서 마약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미 일본에서는 사

17) 김광일, 「마약환자의 생애」, 대한의학협회지, 1969, p.36.

회문제된 메스암페타민을 강력하게 단속하였고, 이에 대해 밀매업자들은 한국에서 이 약물을 밀조하여 밀수입하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1970년까지 한국에서는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규제법이 없었으며, 1970년에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이 약물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 것이다. 1970년대에 한국에서 메스암페타민의 제조, 밀매가 거대한 범죄산업으로 형성된 배경은, 이 약물을 제조하면서 얻는 이익이 엄청나서 여러 번 실패해도 한번만 성공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는 한탕주의가 만연하였기 때문이다.

1977년에는 제2의 대마초라고 불리는 신경안정제가 남용되기 시작했다. 대마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일부 젊은층에서는 구입이 쉽고 법적제재를 받지 않으면서도 대마초 흡연과 비슷한 환각효과를 느낄 수 있는 진통진정제나 신경안정제 등을 다량으로 복용하는 경향이 생긴 것이다.

그밖에도 미군 기지촌 주변에서는 헤로인, LSD, 메스칼린 등의 환각제가 전파되기도 하였다.

5.1980年代

1980년대에 들어와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된 약물은 메스암페타민이다. 1970년대 이후 한·일 양국이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일본에 밀수출하여 얻어지는 이익이 줄어들음에 따라 국내에서 밀조된 메스암페타민이 국내에서 유통되기 시작했으며, 그로 인하여 국내의 남용자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남용계층도 다양

화되어 종래의 폭력배, 유흥업소 종사자 중심에서 학생, 가정주부, 농어민까지 사회 각층에 폭넓게 확산되었다.

당시 이 약물이 만연된 이유는, 이 약물에 대한 제조기술이 확대 보급되었고, 해외 밀수출이 차단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내 재고량이 많이 쌓여 있었으며, 급속한 경제성장에 편승하여 일시적 쾌락을 추구하는 향락적 퇴폐풍조가 만연한 시기였다. 그리고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게임으로 인한 외국인의 출입국이 빈번해지면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마약류의 밀수입이 증가하였다. 메스암페타민의 남용은 1988년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1989년부터 단속이 강화되면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¹⁸⁾. 그리고 이 시기에는 제3의 마약이라 불리는 본드, 신나 등 유기용제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기 시작했고, 본드를 흡입한 환각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하거나 질식사 하는 등 본드흡입으로 인한 사건이 빈번히 발생되어 사회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1980년 12월에 독극물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시행령에 신나, 도료, 접착제를 포함함으로써 본드의 제조와 유통과정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6.1990年代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메스암페타민 밀조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국내 밀매가격이 오르자 외국에서 밀수입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그동안 국내에서는 별로 남용되지 않았던 코카인, 헤로인 등이 밀수입되어 유통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 중이 하

18) 정선태, “마약류 사범의 실태와 대책”,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1), p.16;

나는 한중수교이후 중국교포의 왕래가 자유로워지면서 일부 중국교포들에 의한 생아편 밀수가 나타난다. 이들은 막대한 이윤을 노려 한약재와 함께 생아편을 국내로 밀수하여 판매한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가 동남아 등지에서 생산된 마약류의 밀수 경유지로 이용되고 있고, 국제마약류범죄조직들이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침투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第2節 麻藥類 濫用의 實態

다음 <표 3-1> 은 주요 국가의 마약계수이고, <표 3-2> 는 1970년부터 1993년까지 25년 동안 검거된 마약류 사범의 수를 연도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 3-1 > 주요 국가의 마약계수(1993년 기준)¹⁹⁾

미 국	346	카 나 다	53
벨 기 에	91	이 태 리	43
영 국	77	칠 레	41
스 리 랑 카	72	일 본	15
오스 트리아	63	한 국	7

19) 조병인, 「국내외 마약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정보학교, 1994), p.15.

〈표 3-2〉 마약류 사범의 연도별 남용실태 20)

유형 년도	총계 (100%)	마약사범 인원(%)	대마사범 인원(%)	향정사범 인원(%)
1970년	979	904(92.3)	7(0.7)	68(6.9)
1971	931	759(81.5)	60(6.4)	112(12.0)
1972	1,430	727(50.8)	338(23.6)	365(25.5)
1973	1,159	508(43.8)	348(30.0)	303(26.1)
1974	1,239	289(23.3)	597(48.1)	353(28.4)
1975	1,446	275(19.0)	952(65.8)	219(15.1)
1976	1,774	199(11.2)	1,460(82.3)	115(6.5)
1977	902	132(14.6)	639(70.8)	131(14.5)
1978	671	92(13.7)	483(72.0)	96(14.3)
1979	479	19(3.9)	357(74.5)	103(21.5)
1980	743	128(17.2)	537(72.3)	78(10.5)
1981	909	140(15.4)	553(60.8)	216(23.8)
1982	1,007	134(13.3)	372(36.9)	501(49.8)
1983	1,101	203(18.4)	478(43.4)	420(38.1)
1984	1,027	202(19.7)	408(39.7)	417(40.6)
1985	1,190	361(30.3)	328(27.6)	501(42.1)
1986	1,629	375(23.0)	392(24.0)	862(52.9)
1987	2,016	239(11.9)	318(15.8)	1,459(72.4)
1988	3,939	268(6.8)	351(8.9)	3,320(84.3)
1989	3,876	857(22.1)	1,025(26.4)	1,994(51.5)
1990	4,222	1,215(28.8)	1,450(34.3)	1,557(36.9)
1991	3,133	838(26.8)	1,138(36.3)	1,157(36.9)
1992	2,968	949(31.9)	1,054(35.5)	965(32.5)
1993	7,773	3,364(49.6)	1,509(22.2)	1,900(29.0)

20)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 백서」, 1993, p.33.

〈표 3-2〉 마약류 사범의 연도별 납용실태에서, 1970년과 1990년이 증감의 분기점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의 변화추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86년부터 마약류 사범의 수가 급증하게 된 이유는 일본에 밀수출되던 메스암페타민이 한·일간의 협의에 의해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에서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1988년 이후의 변화추이를 보면,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마약사범과 대마사범은 오히려 급격한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어 마약류가 다른 종류의 약물로 교체되어 가는 환류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전후해서 마약류 사범의 수가 급증하다가 그 이후에는 급감하는 상태가 유지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대검찰청이 중심이 되어 강력한 마약사범 단속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며, 특히 공급사범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힘입어서 마약사범의 수가 감소하는 상태가 한 5-6년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1993년에 들어와서는 매우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86-88년도를 전후해서 마약 공급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정책을 폈을 때 검거되어서 교도소에 들어갔던 제조범들이 형기를 마치고 출감을 해서 새로운 조직을 재결성하는 단계에서 국내에서 공급되는 마약류 양이 늘었고, 이에 수반하여 한국에서의 공급이 부족했던 공백기를 노려 외국의 마약거래 조직들이 알게 모르게 이미 뿌리를 내렸고, 그 조직에서 상당량이 압수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표 3-1〉은 주요국가의 마약계수를 나타낸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세계 주요 국가들은 마약사범 실태를 흔히 마약계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나라의 마약문제의 심각성 정도를 비교한다. 마약계수

는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약계수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마약계수가 10이하 일때는 비교적 안전한 상태로 분류하고, 마약계수가 11에서 20 사이 일때는 여전히 심각하지만 국가 공권력에 의한 통제가 가능한 상태라고 분류한다. 그러나 마약계수가 21을 넘어가면 정부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이와 같이 마약사범의 수, 또는 마약계수를 가지고 그 나라의 마약문제 심각성을 비교하기는 하지만, 마약사범 통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허구성이 많은 자료라고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마약이 제조, 유통, 사용이라는 것이 어느 경우든 단속을 피해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통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숫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에 단속되어서 형사사범 절차를 거친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마약사범의 수를 극히 일부만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第3節 麻藥類 濫用의 向後 展望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했지만 그와 더불어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또한 물질문명의 풍요로움 속에 향락풍조가 만연, 기존의 가치관이 도전받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하의 심리적 우울감, 불안,스트레스 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약류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방화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약물남용 현상은 점점 복잡

화, 다양화, 또는 국제화되고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마약류 남용의 향후 전망은, 동양인의 체질에 가장 알맞는 약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메스암페타민이 여러가지 여건상 주된 약물이라고 전망되고, 현재 미국 등 선진국에서 남용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코카인, LSD, 헤로인 등이 유입도 우려되고 있다. 메스암페타민은 미국 내 아시아계 사람들 사이에서 선호되는 경향이 있고, 이 약물은 대만, 필리핀 등 동남아에서 제조된 후 국내에 계속 밀수입 될것으로 예상된다. 코카인, LSD 등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해외유학생과 외국인들에 의해 상당량이 국내에 유입된 사례가 있고, 코카인은 미국에서 크게 남용되다가 헤로인으로 바뀌면서 미국의 잉여 코카인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약물이다.

헤로인은 제조기술의 발달로 순도가 매우 높아지면서 미국내 마약중독자들 사이에서 선호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남용약물 변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황금의 삼각지대' 등지에서 생산되어 가공된 헤로인이 미국으로 밀수입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경유지로 이용하는 경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과정에서 그 약물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리고 국제마약조직이 우리나라를 마약소비 대상국으로 선정하여 직접적인 판매에 나설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미얀마의 마약왕 '쿤사'가 우리나라에서의 헤로인 시장개척을 시도하기 위하여 헤로인 3.5Kg(소매시가 1,400억원 상당량)을 포섭된 한국인을 통해 국내에반입하여 판매를 시도하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²¹⁾. 따라서 앞으로도 계

21) 동아일보, 1995. 10. 3.

속해서 국제마약조직들이 마약류 국내 반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의 마약류 관련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미국등 주요 국가 마약시장에서 크게 남용되는 약물의 동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第4章 麻藥類 統制政策의 現況

第1節 麻藥類 統制의 規制法規

우리나라에서 마약류에 대한 정부차원의 규제가 시작된 것은 1946년 미군정법령 제119호 ‘마약단속규정’에 의거하여 보건후생국 약무국이 마약감시업무를 개시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후 수차례에 걸쳐 법률의 제정, 개정을 통하여 마약류 규제에 대한 법제의 보완을 거듭해 왔고, 현재는 일반적 법률인 형법과 특별법인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이 마약류 규제법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최근에 청소년층에서 사용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신나, 본드 등의 흡입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약사법은 약사에 관한 사항 중에서 마약류 관리를 위한 제반 의무를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마약법에 규정된 일부의 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고 있다.

1. 刑 法

아편규제를 위한 일반적 형법은 1953년 9월에 제정되었으며, 제17장에 아편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아편을 흡식하거나 아편 또는 아편흡식 기구를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소지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아편 뿐만 아니라 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은 아편흡식 등이 전파되면 그 악습이 사회에 대해 큰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처벌대상을 ‘당장 흡식할 수 없는 아연연도 포함된다²²⁾’ 고 확대 해석하고 있다. 이는 생아편을 끓여서 용이하게 아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편의 개념을 확대하여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형법규정은 각기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사문화되어 있다.

〈표 4-1〉 형법상 아편에 관한 죄의 형별

범죄형태 및 형별					
아편흡식 물편주사	아편,물편, 그 화합물의 제 조,수입,판매,판 매목적의소지	아편흡식기구의 제조, 수입,판매 판매목적소지	세관공무원의 수입,수입의 허용	아편흡식, 물편주사의 장소제공	아편,물편,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 의소지
5년이하 의징역	10년이하의징역	5년이하의징역	1년이상유기 징역	5년이하의징역	1년이하의징 역또는벌금
상습범은가중					상습범규정없 음

2. 麻 藥 法

우리나라에서 마약류에 대한 규제법규가 본격적으로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57년 4월 마약법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다.

22) 대법원 「형사판례유집」, 1960.7.6, No.326, p.258.

본 법이 근원이 된 것은, 1919년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마약류 관련 국제회의, 1924년부터 1926년까지의 제네바 회의, 조선총독부의 1919년 조선아편취체령 및 1937년 조선마약취체령, 1946년 미군정법령 제119호, 1948년 미군정법령 제219호 등을 기초로 하여 제정되었다.

마약법은 마약의 해독을 방지하고 그 사용용도를 정당한 의료용과 과학용에 국한하여 그 취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마약법에 규정되어 있는 마약은 앵속(양귀비), 아편 및 코카인과 이들로부터 추출되는 천연마약과 가공마약, 그리고 이들과 동일하게 남용되어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합성마약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마약을 함유하는 복합체로서 마약성분의 재제조가 불가능하고 상습성이 없는 경우에는 한외마약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다.

마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금지행위는 <표 4-2>와 같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최근 6차 개정에서는 마약의 제조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예비, 음모행위도 처벌하며, 몰수의 대상에 마약 자체 뿐만 아니라 시설, 장비, 자금, 운반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까지 포함시켜 마약사범의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마약사범의 치료보호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표 4-2〉 마약법상의 형벌

주요범죄 형태및형벌					
마약의수입,수출,제조,제조,소유,매매,매매알선또는 상기목적으로 소지하는행위		마약의소지,소유,관리,수수,한외마약제조 마약원료가되는 식물의재배,마약성분을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소지,소유,관리,수수또는 그성분을추출지아세칠물핀(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것을소지,운반,사용,투약,투약하기위하여교부하는행위		마약사용 장소,시설,장비,자금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일반범	영리범 상습범	일반범	상습범	일반범	상습범
사형,무기,또는 10년이상 의징역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징역	1년이상외유 기징역	3년이상외 유기징역	10년이하 외징역	1년이상외 유기징역

3. 大麻 管理法

대마관리법은 1976년 4월에 제정된 법률로서, 1970년에 제정된 기존의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이 마약을 제외한 습관성 있는 의약품 및 대마의 관리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1974년 경부터 일부 연예인들과 청소년층, 그리고 주한미군들의 대마초 흡연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기존의 법률만으로는 그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마를 습관성의약품과 분리하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이다. 이 법률은 1981년 4월에 1차 개정되었다.

대마관리법은 대마의 흡연, 섭취, 소지, 매매, 수출입 등과 장소, 시설, 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일체 금지하고 있으

며, 또한 섬유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대마재배도 허가제로 하여 규제하고 있다. (〈표 4-3〉 참조)

〈표 4-3〉 대마관리법상의 형벌

주요범죄형태 및 형벌					
. 대마의수출입,또는 수출입목적으로 소지		.수출,매매 또는대마의 제조목적으로 재배 .대마초제조,매매,매매 의알선 또는상기목적 으로소지		.대마의재배,소지,수수, 운반,보관,사용 .대마의흡연또는섭취 .장소,시설,장비,자금또 는 운반수단을 타인에 게 제공	
일반범	영리범 상습범	일반범	상습범	일반범	상습범
무기 또는7년 이상의징역	사형,무기,또 는10년이상 의징역	1년이상의유 기징역	형의1/2까 지 가중	10년이하의 징역 또는벌 금	형의1/2까지 가중

4.向精神性 醫藥品 管理法

1979년 12월에 제정되고 1989년 4월에 개정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남용으로 인한 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은 법이 정한 취급자 외에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소유 등을 규제하고 있다. (〈표 4-4〉 참조)

〈표 4-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형벌

주요범죄형태 및 형벌							
.향정법 시행령상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물질의 제조 수출입,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상기목적으로소지,소유 . 향정 의약품의 원료 물질의 제조, 수출입 또는 수출입목적으로 소지,소유 . 향정물질의 원료물질에서 구 성분 추출 또는 그 식물의수출입 또는 수출입목적으로 소지 . 1항2호에 해당하는물질의 제조,수출입 또는 상기목적으로소지		. 제2조1항 1호에 해당하는 향정 의약품 또는 그물질을함유하는 향정 의약품의소지, 소유,사용,관리 . 향정 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물질의 매매,매매의 알선,수수 또는상기목적으로소지 . 제2조1항3호에 해당하는향정 의약품의제조, 수출입또는 상기목적으로 소지		. 제2조1항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향정 의약품또는 그 물질을함유하는 향정 의약품의 매매,매매알선,수수,소지,사용,관리,무약,교부 또는 향정 의 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부 . 제2조1항4호에 해당하는 향정 의약품또는 그 물질을함유하는향 정 의 약품을제조,수출입또는상기목적으로 소지,소유		. 향정 의약품의 원료가 되는식물의 흡연,섭취,또는 상기목적으로 소지 . 장소,시설, 장비, 자금 또는운반수단을제공 . 제2조1항4호에 해당하는 물질의 매매,매매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 관리,조제,무약,교부 또는 처방전발부 . 향정 의약품에 중독되어 자제심을상실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하는행위	
일반범	영리범 상습범	일반범	상습범	일반범	상습범	일반범	상습범
무기 또는7년 이상의징역	사형,무기, 또는10년 이상의징역	1년 이상의유기징역	형의1/2까지가중	10년 이하의징역 또는 벌금	가중처벌 규정없음	5년 이하의징역 또는 벌금	형의1/2까지 가중

5. 有害化學物質管理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독물과 극물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1963년 12월 법률 제1492호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고, 입법 당시에 규제하는 독극물은 약물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70년대에 청소년층에서 본드, 신나 등의 흡입행위가 사회문제화 되자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1980년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 신나, 접착제, 도료 등의 환각물질을 추가하여 규제를 하기 시작했다. 그후 1990년 8월에 제정된 유해화학관리법은 종래의 ‘독물 및 극물

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는 법률로서 화학물질의 섭취, 흡입 및 이러한 목적을 위한 소지행위, 또한 이러한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정을 알면서 판매,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환각물질의 사용은 사용자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 물질의 사용으로 야기되는 비정상적인 정신상태하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되고, 또한 이러한 환각물질을 흡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약물을 남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第2節 麻藥類規制 國際協力

1. 概 設

1990년 2월에 개최된 UN 특별총회에서는 1991년부터 2000년까지를 '마약퇴치 10개년'으로 선포, 마약문제가 어느 특정국가들만의 문제를 떠나 범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한 문제라는 인식과 함께 전세계가 협력하여 해결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약류가 '인류의 공적'으로 표현되며 마약류 퇴치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는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국가간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국가들간의 이해관계로 협력을 거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가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국제협력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못하였다. 마약류 또는 그 원료물질의 생산과 거래로 이득을 얻는 국가들, 특히 마약

류 산업이 국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들에 있어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들을 자신들의 국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졌고, 그것은 강력한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마약류 생산지역에서의 마약류 남용 증가현상이 발생, 즉 생산지역에서의 마약류 입수의 용이함과 제조실험 대상의 확대로 남용자의 증가, 마약류 소비국들이 통제강화로 인한 새로운 수요개척 등으로 인하여 생산국에서도 마약류 남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마약류 문제는 일부 국가들만의 문제라는 단계에서 벗어나 전세계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에 공동대응이 절실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1988년 12월에는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유엔 협약’이 채택되면서 이에 가입하는 국가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가입국 스스로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자국의 법제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종래의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은 공급측면에서 주로 코카인 억제를 위한 코카재배의 단속, 헤로인의 원료인 앵속재배 단속 등과 함께 생산자에 대한 전업자금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1988년 협약’ 이후에는 마약류의 불법수익의 흐름을 차단하고 이를 박탈함으로써 공급조직 내지 밀매조직에 경제적 타격을 주는 방안과 마약류 제조 원료물질이 생산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봉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문제가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²³⁾

23) 문영호,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의 실태와 전망”, 1992, p.103.

2. 麻藥類規制 國際協約

마약류 불법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노력이 국가간의 조약으로 나타난 것은 1833년 미국과 SLAM과의 사이에 체결된 통상조약에서 아편을 금수품으로 다룬 것이 최초의 마약류규제 조약이다.

그리고 마약류 문제가 국제간의 분쟁으로 심각하게 대두된 것은 19C 중국에서이다. 중국은 영국과의 전쟁, 즉 아편전쟁 패배후 인도로부터 무제한의 아편을 수입하게 되었고, 그후 아편무역문제를 거론하기 위해 1909년 상해에서 개최된 ‘국제아편회의(International Opium Commission)’에서는 마약무역금지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이 회의는 마약류에 관한 최초의 국제회의로 기록되고 있다. 이 회담을 계기로 ‘헤이그 아편회의 (1911.12-1912.1)’가 개최되고, 최초의 마약류 관련 협약인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을 체결하였으며 이 회담을 시발점으로 하여 마약류에 대한 관리 및 감시가 국제협약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헤이그협약은 가맹국간의 대립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후 설립된 국제연맹은 그 산하에 ‘아편 및 기타 위험약물 거래에 관한 자문위원회’ 또는 ‘아편자문위원회(Opium Adversary Committee)’를 두고 아편통제국(OCB)을 구성, 헤이그 협정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OCB 대표국들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조약의 강제이행은 회미해졌다.

그후 ‘1925년 협약’, ‘1931년 협약’, ‘1936년 협약’,이 체결되었는데, ‘1925년 협약’은 국제연맹에 각국의 마약수입인증체제를 감시하는 권

한을 부여하였고, '31년 협약'에서는 마약류의 제조와 수출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마약제조 및 분배단속에 관한 조약' 및 '아편의 흡식방지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면서 형벌규제의 국제기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그 조약들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탄생된 국제연합(UN)은 국제연맹의 마약관련 기능을 승계하여 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업무를 분담케 하였다.

UN은 '1946년 의정서'와 '아편의정서' 등을 채택하여 국제마약류 통제체제를 강화하여 왔으며, 현재의 마약류 통제에 관한 국제조약은 기존의 모든 마약류 관련 협약을 통합하여 보다 간명하게 마약류 통제를 하기 위하여 1961년에 채택된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이다. 이 협약은 1972년에 일부 조항을 개정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마약류에 관한 또 다른 국제조약은 지금까지 마약에 국한시켰던 국제관리체제를 환각제, 각성제, 수면제, 진정제 등 마약류의 범위를 향정신성물질까지 확대하여 1971년에 체결된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이다. 이 협약에서는 향정신성물질의 사용을 과학용과 의료용으로 국한하고 각국의 협력하여 이러한 물질의 남용 및 불법거래를 방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마약류 남용문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마약범죄조직의 거대화과 국제화 등으로 마약류 불법거래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조약에 의한 통제만으로는 마약류의 남용을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1988년 12월에는 마약류 불법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목적으로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에서는 마니퐁더링을 포함하여 마약류 불법거래의 처벌, 마약류 불법거래에 의해 취득한 이익의 동결 및 몰수, 범적인 인도, 국제수사 협력의 강화 등 국제범죄조직들의 활동 등에 관한 구체적 조항에 이르기까지 국제마약통제의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국제마약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전세계적 메카니즘을 창조하였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104개국 대표 및 전문가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하여 채택된 이 협약은 1990년 11월에 조약발효에 필요한 20개국의 주요 국가의 서명을 거쳐서 발효되었다.²⁴⁾

1988년 조약이후, 불법 마약류 통제를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국제협력 조류는 불법수익 정화에 대한 단속과 마약류 필수화학물질의 통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FATF와 CATF 등이 있다. 1989년 7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15차 서방선진 7개국(G7)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선언을 통하여 ‘88년 UN 협약’의 조기체결, 국제협력의 강화, 그리고 마약류 부정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불법수익에 대한 대책이 불가결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의 돈세탁방지 대책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금융문제 특별대책기구, 즉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FATF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독일, 이태리, EC 등 회원국과 스웨덴, 네델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호주 등 마약문제에 관심을 가진 국가들이 참가하여 파리 워싱턴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1990년 2월 자금세탁대책에 관한 40개 항목의 권고

24) Report of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p.20.

(Recommendation)를 포함하는 전체보고서를 채택하고 1990년 7월에 개최된 제16차 휴스턴 정상회담에 제출되었다. 이 휴스턴 정상회담에서는 88년 유엔협약의 조기체결, FATF의 권고사항 실시 등을 강력히 촉구하는 경제선언이 발표되었다. 또한 헤로인, 코카인, 합성마약 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의 흐름을 차단하고 마약류의 제조 자체를 억제시키기 위하여 화학물질 특별대책그룹, 즉 CATF(Chemical Action Task Force)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²⁵⁾.

CATF는 미국의 주도로 G7국가, EC 그리고 화학물질의 주된 생산국, 마약 제조국 들인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헝가리, 인도, 네덜란드, 페루, 파키스탄, 태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등의 국가들이 참석하고 국제기구로서 미주기구(OAS), 국제마약통제 특별위원회(INCB) 등이 참가하였으며, CATF에서는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22종류의 화학물질을 통제물질로 규정하여 이러한 물질의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1990년 4월 UN에서 개최된 마약류 특별총회에서는 마약류 남용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불가결하다는 인식하에 마약류 문제는 세계 각국의 공동책임이라고 강조하며, 2000년까지를 UN 마약퇴치 10개년으로 설정, 마약류 남용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UN의 주도하에 전세계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선언문’과 ‘행동강령’이 채택되었다.

그외 미주에서는 1992년 OAS 산하의 CICAD(Inter-American Drug Abuse Control Commission)는 ‘불법마약류거래 등 마약관련 범죄에

25)문영호, 『전개논문』, pp.113-114.

의한 불법수익의 정화에 관한 모델규제'를 채택하였고, 유럽지역에서는 1990년 11월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가 '범죄수익의 세탁, 압수, 수색 및 몰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해 12월에 EC는 일정범위의 화학물질 등이 마약류 불법제조에 유용되는 것을 억제할 목적으로 '필수화학물질 수출전 통제제도'를 채택하였고, 1991년 경제사회이사회는 코카인과 헤로인의 필수화학물질에 대한 수출허가제도를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EC는 1992년부터 각 회원국이 의무적인 수출허가제도를 도입하고, 해당물질의 불법유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당기관 상호간 협력을 통해 정기적으로 수출전 통제제도와 수출허가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1988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서유럽국가 11개국의 중앙은행 및 은행감독기관의 대표들이 모여서 은행제도가 돈세탁의 범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바젤선언', 즉 금융통제 및 감독업무에 관한 원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는 상당히 큰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麻藥類統制 國際機構

가. 마약위원회(Commission of UN Narcotics Drugs)

마약위원회는 1946년에 설립된 UN 경제사회위원회 특수위원회로서 국제연맹 산하의 '아편 및 기타 위험약물 거래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이어받아 세계 마약류 문제에 대한 대책수립 및 UNDCP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구이다. 이 기구는 임기 4년인 53개국의 위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 및 특별회의가 매년 교대로 개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위원국으로 활동했다.

마약위원회는 국제마약통제정책 결정의 최고 심의기구로서 국제협약의 이행여부를 감독하고 있는 경제사회이사회 기능의 보조하며,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통제기구와 관련정책을 조정 및 검토한다. 또한 새로운 조약이나 국제적인 문서를 준비하고, 통제물질의 개정,추가 등에 대한 제안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마약위원회 산하에 ‘마약법집행기관장 회의(HONLEA)’를 두고 각 지역의 마약류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나.UN 약물통제본부(UNDCP)

UN 약물통제본부(UN Internatioal Drug Control Programm)는 1990년 UN총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UN 마약과, UN 약물남용통제기금(UN FDAC) 등 기존의 3개기구를 통합하여 국제마약류 통제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UN의 마약류 통제활동을 조정하고 마약류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1991년 3월에 설립된 기구이다.

UNDCP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마약류 불법거래 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 마약류남용 예방교육, 중독자의 치료·재활, 마약류 불법거래 감시 기능 및 과학장비·재정 지원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마약류 불법거래의 통계·동향 분석,마약류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국가간 정보 및 의견교환 등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UNDCP는 1991

년 4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UN 마약위원회는우리나라 정부가 제의한 ‘UN 마약퇴치 친선대사제도’를 도입하여 마약퇴치를 위한 기금모금과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²⁶⁾. UNDCP의 친선대사는 마약퇴치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각국 지도자와 운동가,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 협조와 원조를 확보하는 일이다.

UNDCP는 1995년 2월 비엔나 UN사무국 모임에서 세계은행과 UNICEP(유엔국제아동기금), UN개발프로그램 등의 기구들과 함께 마약과 대항하여 싸울 것을 합의했고, 이들 기구들은 UNDCP가 리드하는 캠페인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동의했다. 아시아의 경우, 중국과 태국,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이 결합하여 지역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정보교환을 통해 마약을 퇴치하는 공동계획을 수립토록 했다²⁷⁾. UNDCP의 활동 성과중 가장 큰 부분은 지역적인 협조야말로 마약밀매의 확산을 줄일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다.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는 1961년의 마약에 관한 ‘UN단일협약’에 의거 설립된 기구로서 UN의 직속 기구는 아니다. 그러나 INCB는 마약관련 국제협약의 이행을 감시·평가하는 기구로서 UN사무총장의 행정적 감독하에 UNDCP와 밀접한 연대관계를 통해 국제마약류 통제체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상호 보완적

26) 우리나라의 정트리오(정경화,정명화,정명훈)가 초대대사로 선정되어 임기에 관계없이 각국을 순회하면서 연주 행사와 리셉션 등을 통해 마약퇴치를 위한 기금모금과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27) 조선일보, 1995.10.7.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기구는 마약류 사용을 의료용, 과학용으로 제한하기 위해 각국의 정부와 협력하여 마약류의 재배, 생산, 수출입 등을 관리하며 불법적인 재배, 제조, 거래 등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특히 마약류의 불법적인 전용과 사용을 추적하기 위하여 생산과정에서부터 소비자까지의 마약류 이동을 감시하고, 마약류의 단속과 감축을 위해 WHO, ICPO 등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71년 협약'에 의거하여 마약류의 정보분석을 포함한 업무추진사항, INCB의 관찰결과와 권고, 회원국에 의해 요구 또는 제출된 설명서를 내용으로 하는 연례보고서를 마약위원회를 통해 경제사회이사회로 제출하며, 각 회원국에도 보고서를 배포한다. 또한 '88년 협약'에 의거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수요공급 조절을 위한 소요량 및 통제체제를 관리하고 각국 정부, UN기구 및 기타 기구가 제공한 정보분석을 토대로 당사국을 참석시켜 관련정보를 제출케 하며 필요한 조치를 당사국에 요구하고,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여 연례보고서를 작성, 마약위원회에 보고한다.

라.국제형사경찰기구(ICPO,Interpol)

1926년 비엔나에서 창설된 국제형사경찰위원회는 다양화되고 있는 국제범죄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가간 형사범죄의 상호협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56년 6월에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로 확대 개편되었다.

ICPO는 창설 이래 불법마약류 거래조직 단속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하여 왔다. 현재 162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1964년에 가입하였고, 경찰청 형사국에서 ICPO 한국 중앙사무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ICPO은 도주범의 체포와 신변확보, 범인수배, 범죄정보 교환 및 각종 조회 등 범죄수사의 국제간 협력에 증진하고 있으며, UN 마약위원회와 협정을 맺어 회원 상호국간 또는 ICPO을 통하여 마약범죄를 포함한 형사범죄의 정보교환, 마약범죄 수사기법 교환 등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도 강화하여 국제마약류 통제활동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

마.관세협력이사회(CCC)

1952년 11월 국가간 관세협력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세협력이사회(Customs Cooperation Council)는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밀수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공동대처하기 위하여 관세의 측면에서 상호간 지원 협정을 체결하고 관련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Interpol,미국 DEA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 정기·수시회의를 개최하여 마약류에 관한 국제적 추세와 동향, 적발기법, 가격의 변화추이 등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있다.

바.UNESCO(UN 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는 청소년등의 마약류 남용실태와 대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세계 각국에 제공하고 효과적인 예방교육을 위한 지식을 보급하는 등의 마약류 예방활동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마약류 남용 근절을 위한 지역회의, 각종 심포지움, 연구발표 등을 개최하여 마약류 불법수요 방지 및 감소차원에서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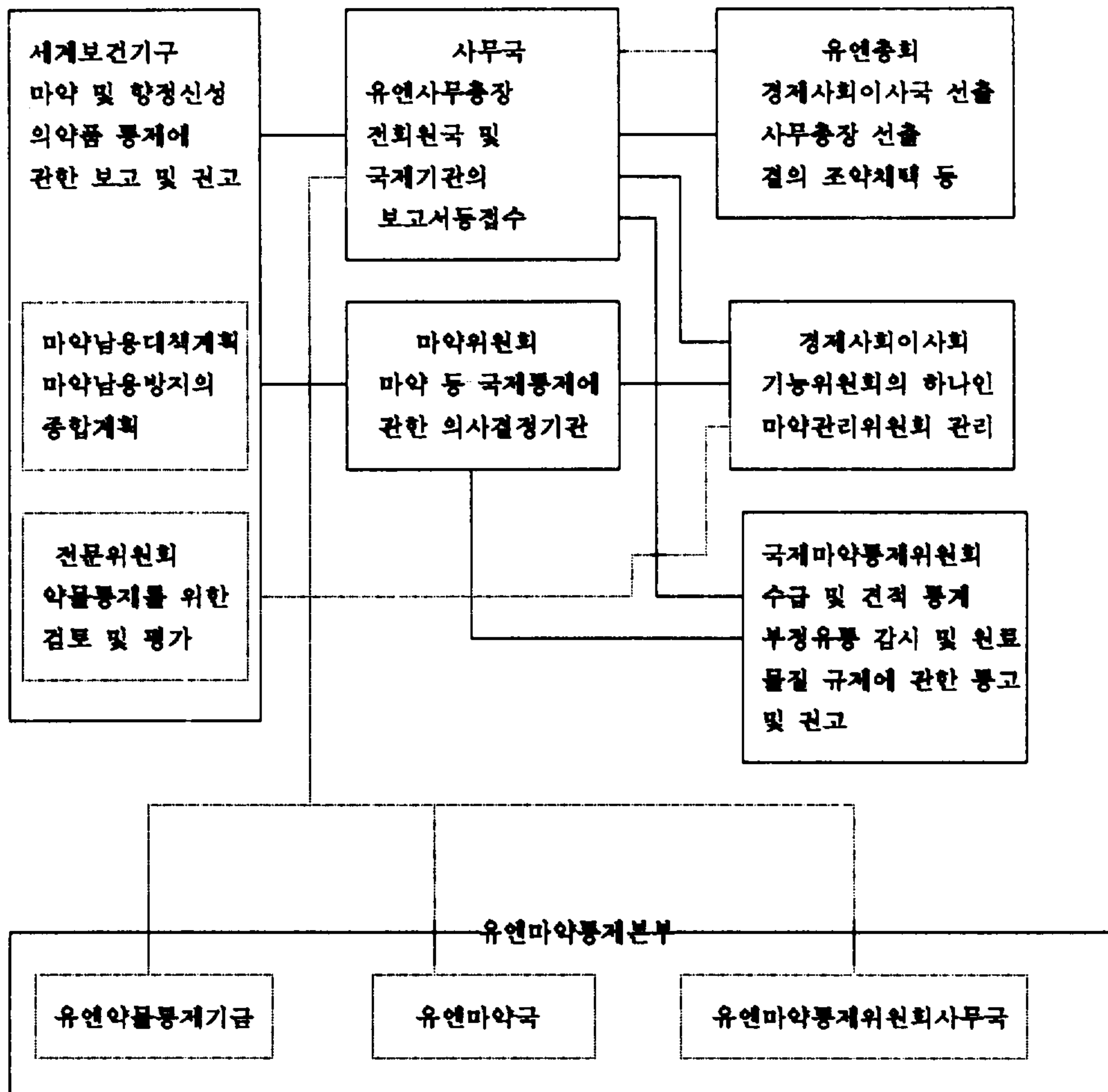
사.세계보건기구(WHO)

1947년에 설립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질병퇴치 활동의 일환으로 마약류 공급과 수요를 차단하는 방안을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WHO는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단일협약에 규정된 통제대상물질의 추가, 삭제 등에 대해서 관여하고 홍보, 계몽, 교육, 의료용 마약류의 통제, 중독자 치료대책 등을 강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국제기구 이외에도 UN의 식량농업기구(FAO), 국제노동기구(ILO), 세계관광기구(WTO) 등과 유럽공안위원회, 유럽이사회, 아·태지역 경제사회이사회(ESCAP), 동남아연합(ASEAN) 등 다수의 기구들도 UN과 협력하여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한 통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마약류통제 국제기구를 요약하면 다음 < 표 4-5> 와 같다.

〈표 4-5〉 마약류 관련 국제기구²⁸⁾



- ※——규정에 의한 마약 등의 통제에 관한, 권고, 보고, 자료제출, 협의 등을 하는 관계
- 규정에 의한 회원국 선출, 결의 등에 근거한 기관을 설립하는 관계

28) 주왕기, 「본드·마리화나·필로폰」, (박영를 출판사, 1995), p.150.

第3節 統制機關別 統制政策 現況

1. 概 說

마약류 통제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마약류 남용과 불법거래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남용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단속 그리고 중독자의 재범발생을 막기위한 재활, 치료 등에 동등한 가치를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문제를 국민보건문제나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보다는 형사적인 문제로 간주하여 단속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즉 마약류의 제조, 밀매, 밀수 사범이 아닌 단순한 마약류 남용자 내지는 중독자들을 치료받아야 할 환자로 인식하기 보다는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범법자로 인식하고 이를 엄벌에 처하여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만이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인 것처럼 여겨왔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위주의 통제정책으로 마약류 남용자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병행하지 않고 단속만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마약류 범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어렵다. 더우기 중독자들에 대한 완전한 치료가 없이는 그들의 마약류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

강력한 단속은 마약사범을 근절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마약류 문제의 근본적인 다른 해결책들과 병행되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마약류 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속활동과 함께 마약류 사범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 및 치료와 재활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 마약류 통제정책이 단속위주로 전개되어 왔다고 해서 여타의 분야가 전혀 무시되었던 것만은 아니다. 최근 정부는 각 부문별로 많은 관심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연혁적으로 볼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마약정책이 수립, 추진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2.機關別 麻藥類 統制政策

가.保健福祉部

우리나라에서 마약류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 것은 1919년 6월에 조선총독부가 아편취체령을 공포하여 아편의 재배와 사용을 규제하면서 부터이고, 해방후에는 보건후생부 마약과가 미군정의 마약단속 업무를 인수하여 담당하면서 시작되었다. 1952년 7월에는 보건사회부 마약과가 신설되고, 마약감시원제도를 두어 마약사범의 집중적인 단속업무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마약통제정책이 실시되었고, 그후 형법, 마약법이 제정되면서 아편중독자를 규제하는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197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마약밀조 현황은 원료공급자를 중심으로 조직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수법이 외국에 비하여 극히 원시적이고 소규모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형편으로, 정부에서는 마약사범의 근절을 위하여 마약원료 밀매사범과 밀조자 단속에 중심을 두어왔다.

그러나 1963년 '메사돈 파동'을 계기로 우리사회에서도 사용되는 마약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정부는 마약법의 보완개정과 함께

1970년 8월에는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을 제정하여 보다 강력한 단속을 전개했고, 더불어 마약류의 해악에 대한 계몽활동도 병행하여 전개하였다.

이와같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홍보활동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주한미군 기지촌 주변을 중심으로 새로운 마약이 등장하고,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대마사범의 급증하였으며, 80년대에 들어서서는 메스암페타민 등 향정신성물질의 등장으로 정부는 보건사회부의 활동만으로는 마약류 통제정책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마약류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을 폐지하고 1979년 12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제정하여 마약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1989년 2월 대검찰청에 마약과를 신설하여 마약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다.

대검 마약과의 설치로 보건사회부의 마약과는 보건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마약감시원들은 검찰로 이관된다. 그후 보건복지부의 대마약 업무는 마약사범의 단속보다는 합법적인 마약류의 품질관리와 유통감시, 그리고 마약류의 남용예방과 교육, 홍보 및 치료측면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마약류 통제정책의 기본방향은 마약류의 공급과 수요를 차단하는 두가지 방안을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할 것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서 ① 홍보·계몽교육의 강화 ② 의료용 마약류의 철저한 관리통제 ③ 중독자 치료의 효율적 대책강구 ④ 국제협력 증진이라는 네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구체적 대책들을 표로 나타내면 <표 4-6>과 같다.

〈표 4-6〉 보건복지부 마약관리과의 대책

홍보·계몽교육 의 강화	· 민간주도의범국민적 홍보활동전개 · 홍보·계몽자료의 개발보급 · 홍보 계몽활동의 전개 · 계몽교육의 실시
의료용 마약류 의 철저한관리	· 의료용 마약류의유통과정에대한 철저한 자료점검 · 유통질서확립을위한 마약류 제조업소 실태조사 · 품질향상을위한 시중유통품의수거점검
중독자 치료의 효율적관리	· 치료보호 지정병원을 통한 중독자 치료 · 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병원 건립추진
국제협력증진	· 국제간의마약류 밀거래 방지를위한 정보교환 및 사범검거 · 국제협약의준수

위의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는 마약류사범 단속 및 검거 등의 업무를 검찰로 이관한 후 단속보다는 의료용 마약류의 활동감시와 마약류 남용의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계몽 그리고 중독자 치료보호 등의 측면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종전의 마약감시원을 검찰에 이관한 후, 현재는 사법경찰관리의 자격을 가지지 않고 마약류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감시원을 두고 마약류의 제조, 유통, 소비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된 단속 대상은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국한되고 있다.

나. 檢 察

마약류 단속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검찰이 본격적으로 마약류 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시작한 것은 얼마되지 않는다. 1945년 해방과 1950년 6.25동란을 거치면서 우리사회에 마약중독자가 급증하게 되자 검찰은 보건사회부의 마약감시원을 활용하여 아편 등의 마약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시작했으나 실효성있는 단속은 하지 못하였다.

1965년 ‘메사돈 파동’을 계기로 서울지검과 일부 지방검찰청에 마약 전담반을 설치하고 전담검사를 두어 여러 수사기관들과의 유기적인 지휘체제를 세우면서 마약류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더우기 1970년부터는 대검찰청과 각 지방검찰청에 각각 전담검사를 두고, 마약류 관계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마약사범 전담단속반’을 편성하여 유기적이고 일원화된 지휘체제를 확립, 전국적으로 기동성 있는 단속을 실시했다.

이러한 합동수사반이 설치된 이후, 검찰은 1972년부터 1975년 기간의 4년동안 습관성의약품사범 4,331명을 적발하는 등 마약류 사범의 증가를 억제하는데는 크게 기여했으나 이 기간중에 발생한 대마사범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하였고, 또한 합동수사반은 법령과 예산으로 뒷받침되는 제도적인 기구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 검찰의 지휘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수년이 경과하는 사이에 그 조직의 기능이 약화되기에 이르렀다²⁹⁾. 그래서 당초 의도하였던 유기적이고 일원화된 단속체제는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며,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도 조직적이고 체계적

29) 김영재, 「마약류 현황과 대책」, 검찰 71호, 1978, p.145.

인 대응은 하지 못하였다.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대마사범이 급증하고 메스암페타민 남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검찰, 보건사회부, 경찰, 세관 등의 기관들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던 마약류 사범에 대한 단속을 일원화 시키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1989년 2월에는 검찰청법을 개정하고, 대검찰청 강력부에 마약과를 발족시키는 한편 보건사회부의 마약감시원 59명을 검찰로 이관시켜 전문적이고 강력한 단속체제를 구성하였다.

검찰은 우리사회에서 마약류 범죄 및 마약류 남용현상이 이미 피상적이거나 지엽적인 단계를 벗 벗어나 마약류 남용문화가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판단하고³⁰⁾, 이러한 마약류 범죄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왔다.

검찰에서는 마약류 문제는 공급의 차단과 수요의 억제라는 두가지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우선 공급 차단을 위해서는 마약류의 불법유통 방지, 국내 밀수입 차단, 밀조·밀매 등 국내 공급조직을 통한 공급의 차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수요억제를 위해서는 마약투약자들을 단속하고 검거자들의 재범을 방지하며, 이러한 마약류의 남용이 일반 국민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안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마약류의 철저한 관리통제, 전문적인 단속수사, 마약류 남용자들에 대한 근원적인 치료와 복귀, 체계적인 계몽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은 마약류 통제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적 수사요원

30) 대검찰청 마약과 「전국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 결과보고」, 1989.4, pp.12-14.

육성과 증원, 수사장비의 과학화, 정보의 수집 및 수집된 정보의 효율적 관리, 단속기술의 개발 및 수사절차 개선,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국제협력의 강화, 재범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세미나 및 공청회를 통한 대국민 홍보와 계몽에 주력하고 있다.

다. 關 稅 廳

관세청은 각 공항, 항구를 통하여 밀수출입되는 마약류에 대한 감시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마약류 사범에 대한 인식과 지식, 경험부족 등으로 단속실적은 검찰과 보건복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관세청은 마약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1990년 4월에 마약류 전담부서인 정보담당관실을 신설하고, 8월에는 공항만과 보세구역내에서 발생하는 마약류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였으며, 1993년 5월에는 마약담당과를 신설하여 현재 전국 세관에 마약전담반 41개반을 편성하여 운영중에 있다.

관세청의 대마약 활동중 특기할 사항은 국내외 마약관련정보를 종합 분석한 밀수정보지를 발행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있으며, 각종 과학장비를 도입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업무를 강화하고있다³¹⁾. 그리고 마약류 단속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공동대처하기 위하여 세관 상호간 지원협정체결 및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마약류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정보교환을 위한 각종 국제회의에도 적극 참석하고 있다. 또한 검찰, 경찰, 보건복지부, 국가안전기획부 등 마약류 관련 유관기관이 참

31) 관세청, 「최근의 마약밀수 동향과 세관대책」, 1994. pp.85-88.

가하는 실무회의에 수시로 참석하여 정보교환 및 세관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약류의 국내동향 등을 분석하고 있다.

관세청은 마약류단속 전문요원을 육성하기 위해 직원들의 해외훈련을 실시하고, 외국 세관 등과도 수시로 정보교환을 하여 마약류의 국제적 동향, 적발사례, 수법, 가격의 변화추이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가 더욱 조직화되고 지능화되어가는 추세에 비해 현재 세관 각 지역에 배치된 인원과 장비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마약류가 세관을 통해 밀수출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확충과 끊임없는 장비의 개발이 필요하다.

라. **경 찰**

경찰은 인력부족과 전문지식 결여 등 여러가지 이유로 마약류 사범에 대한 단속을 거의 수행하지 않고 있었으나, 1988년 4월 부산지검이 부산지역 경찰서의 마약전담반에 대한 마약류 수사교육을 계기로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검찰은 마약류의 밀조, 밀수, 밀매 등 조직범죄의 단속에 중점을 두고, 경찰은 투약자 및 남용자의 단속에 주력하는 등 검찰과 경찰이 업무의 분업화로 효율적인 마약류 단속을 기하기로 하였다.

경찰은 마약류 사범을 전담하는 별도의 직제를 두지 않았으나 마약류 사범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과에 마약류 사범을 전담하는 마약계를 신설하였으며, 현재 대도시 및 공항·항만을 관할하는 각 시도의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마약류 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경찰관서 직원의 마약류사범 수사요원화를 목표로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경찰학교 등에서 마약류 사범 수사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³²⁾. 그리고 마약류 사범에 대한 단속과 병행하여 마약류 범죄 예방차원에서 마약류 사범 전과자 및 우범자들에 대해서 주기적인 관찰 등을 실시하여 재범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리고 유엔이 정한 '세계 마약류 퇴치의날' 을 관련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대국민 홍보 및 계몽 행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인터폴을 통한 국제 공조수사체제를 강화하여 마약류 사범 수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마. 國家安全企劃部

최근 마약류문제가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마약, 밀수, 테러 등의 국제범죄조직 활동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편승하여 국내에도 이러한 조직들이 급속히 침투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도 최근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마약류의 밀조, 밀거래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도 이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범죄조직들은 세계 각국을 연결하는 국제적 조직망을 갖추고 도처에서 각종 범죄를 유발시키고 있는데, 특히 일본의 '야쿠자'가 약 8만명, 미국의 '코사노스트라', 이태리의 '마피아'는 각각 2만여명, 콜롬비아의 '메데린 카르텔'과 '칼리 카르텔'은 약 8-10만명 정도에 이르는 거대한 조직을 거느리고 있고, 이러한 조직들은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각국의 범죄조직 및 비

32) 김상희, "마약류 통제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pp.131-133.

호세력과 결탁하여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런 조직들이 국제화, 개방화 물결을 타고 국내침투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범죄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은 1970년대 이후 외화벌이 일환으로 함경북도, 양강도, 황해북도 등 일부 산간지대에서 양귀비를 대규모로 재배하여 ‘대성총국’ 주도하에 밀수출을 하여 왔는데, 1989년 이후에는 외화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아편생산에 주력, 양귀비 재배면적을 10배로 확대하고, 노동당 소속 무역회사인 ‘능라상사’ 해외 주재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양귀비를 대규모로 재배, 중국 길림성 등 국경도시를 통해 중국으로 유입시키고 있고, 마약의 운송 편의를 위해 아편을 헤로인으로 정제하여 밀수출 시키고 있다³³⁾. 그리고 외교관을 통한 마약밀수로 주재국들과의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안전기획부에서는 마약류 범죄가 국제적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고, 북한이 국제 마약류문제에 깊이 개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약류 문제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업무영역을 부가하여 1993년 6월에 ‘대마약정보센터’를 설치하고 국제마약정보 수집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 밀수, 테러 등 국제조직범죄가 국내침투를 기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1994년 1월에는 ‘대마약정보센터’를 ‘국제범죄정보센터’로 개편, 마약관련 정보수집 뿐만 아니라 밀수, 테러 등 국제범죄 전반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안기부는 1994년 2월부터

33) 조선일보, 1996.4.17.

서울, 부산, 인천, 마산, 제주 등 공항 및 항만지역에 ‘국제범죄신고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외국 정보기관과의 정보협력 확대를 통한 국제범죄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제범죄조직이 마약, 테러 등의 범죄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그러한 특수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특수범죄에 대한 수사권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안기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안기부의 특수범죄에 대한 수사권 보유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³⁴⁾

34) 조선일보, 1995.10.5.

第5章 麻藥類 統制政策의 評價 및 改善方案

第1節 統制政策에 대한 認識

1. 麻藥類 問題에 대한 認識의 變化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통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노동의 통제와 잉여인구의 통제로 나뉘는데, 전자는 공식적인 경제부분의 노동 과정에 편입된 사람들에 대한 통제를 가리키며, 후자는 여기에서 배제된 사람들, 즉 잉여인구에 대한 통제를 가리킨다.

현재 자본주의 국가에서 잉여인구의 통제는 사회보장제도와 범죄통제라는 형식으로 실시된다. 그리고 이 두가지 방법중에서 어떤 것에 의존하게 되는가는 그 국가가 동원할 수있는 자원의 크기에 달렸있다. 즉 가용자원을 풍부하게 동원할 수 있을수록 사회보장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억압적인 성격이 강한 범죄통제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국가가 마약류 범죄를 통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약류의 범람으로 인한 그 사회의 황폐화를 막고 건전한 노동력을 보호, 유지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마약류 범죄의 사회오염을 우려하는 일반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회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즉 국가는 마약류 범죄를 통제함으로써 건전한 노동력의 침식을 막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 부터는 사회의 보편적 관리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국가의 정당성까지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통제는 그 통제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다른 범죄에 대한 통제보다 많은 경비를 필요로 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확보여부가 마약류 범죄에 대한 통제효율성의 정도를 결정한다. 그리고 마약류 범죄의 통제는 차별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법적용 과정에서 통제기관에 의한 마약사범들의 사법적·행정적 처리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몇가지 비효율성 때문에 국가가 애초에 통제의 동기로 삼았던 정당성 확보노력을 감소시키며, 통제의 동기와 통제의 비용의 균형위에서 설정된 통제계획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우리 정부는 그간 마약류 남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경주해 왔다. 특히 단속 차원에서는 종전에 보건사회부와 검찰로 이원화되었던 단속수사체제를 일원화하여 대검찰청 마약과가 중심이되는 수사체제를 확립하고 마약류 사범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국가들처럼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문제가 되지 않아서인지 정부나 일반 국민들이 마약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한 간혹 일어나는 마약류 문제 등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보다는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마약류 문제를 형사법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마약류의 제조, 밀매, 밀수사범이 아닌 단순한 남용자에 대해서도 과도한 단속과 처벌로 일관해 왔으며, 마약류 남용에 대한 예방과 교육, 치료와 재활부분은 상대적으로 소홀

리 다루어져 온 것이다. 그러므로 마약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국민들이 마약류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마약류 통제정책의 기본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마약류 중독자 내지는 남용자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마약류 사범에 대한 단속이 우선인가, 예방을 우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다.

마약류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이나 국민들의 의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그 국민의식 정도에 따라 통제정책 방향이 정해질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마약류 중독자 내지는 남용자에 대한 처벌강화로 이들이 단속기관에 발각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기피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마약류의 제조 및 공급사범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엄단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남용자에 대해서는 형벌에 의존하기 보다는 치료에 의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마약류 문제의 해결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그 해결이 불가능한 일이므로 마약의 해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계몽, 홍보로 국민 모두가 마약류 남용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국민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민간차원에서도 마약류 퇴치를 위한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만 마약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統制政策의 當爲性

마약류 통제정책이 그동안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보니 최근 여러 국가에서는 마약류 문제를 어떤 측면에서 다시 접근해야 될 것인지, 그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런 의문을 제기해 놓고 여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새로운 통제정책을 일부 시도하는 국가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그 어떤 대책을 제시하기 이전에 하나의 흐름으로, 최근에 일부 국가에서 일고 있는 마약 해금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마약해금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마약사용을 합법화시키자 또는 마약사용을 처벌하지 말자는 두마디 말로 요약된다. 그리고 마약 해금론자들이 주장하는 이유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이 자기가 살기 싫으면 죽을 자유도 있는데 고민이 있어서, 통증이나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뭔가 고민이 있어서, 활력을 찾기 위해서 마약을 복용하는 것인데, 정부가 간섭을 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한테 해롭기로는 술 담배가 훨씬 더 해롭고, 그것은 인간의 심신황폐화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음에도 묵인을 하면서도 왜 유독 마약만 금지시키는 것이냐 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약금지에 승복할 수 없으며 마약을 사용하는 것을 절대로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주

장한다.

두번째는, 강력범죄를 촉발시키기 때문에 마약사범을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마약류중 상당수는 복용을 하게 되면 인간의 기질이 포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심리적인 안정상태에 빠져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음악을 틀어놓고 조용히 혼자 감상을 한다거나 또는 지난날의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한다거나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강력범죄를 촉발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마약이라는 주장이다. 흔히 언론보도에, 누군가가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인질극이라든지 흉악범죄를 저질렀다는 보도는, 그것은 그 사람이 마약을 복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마약과는 무관한 것이며, 근본적으로 그런 상황을 야기시킬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로, 재산범죄를 조장하기 때문에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도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마약사범들이 마약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강도나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재산범죄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다. 마약사범들이 절도나 강도를 해서라도 마약구입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마약값이 비싸기 때문이며, 그 값이 비싼 이유는 정부가 공급을 통제하니까 마약을 구하기가 어렵고 또한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싼값에 마약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절도나 강도 등의 범죄를 일으킨다. 만약에 정부가 단속을 하지않고 공급을 자유화시키면 마약값이 내려갈 것이고 따라서 강도나 절도 등의 범죄는 저절로 없어진다는 주장이다.

네 번째로, 범죄조직의 자금원화, 즉 조직범죄단체가 마약유통과정을 장악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막대한 이익을 가지고 조직의 규모를 키우고 다른 불법사업에 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잘못이라는 것이다. 마약거래조직이 마약을 취급하면서 거액의 수익금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정부가 마약을 단속을 해서 마약가격이 비싸지게 되기 때문이며, 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한 비용과 최종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가격차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범죄조직들이 개입한다는 주장이다.

다섯번째로, 마약이 퇴폐향락문화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주장도 잘못이라는 것이다. 향락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보다 더 향락의 도를 높이기 위해 마약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오히려 마약이 갖는 그런 부작용과 황폐화,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해서 마약의 사용량을 적절히 사용토록 하는 계몽은 필요하나 향락을 추구하는 그 자체를 문제 삼아서 그것을 단속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이상과 같은 논조에 근거를 두고 마약의 해금을 주장하고 있는데, 흔히 마약류 해금론은, ‘마약류 합법화론’과 ‘마약류 비범죄화론’으로 크게 대별되는데 그 차이는 대동소이 하다.

마약류 합법화론은 일단 마약류는 인간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기본전제하에 마약류에 대한 단속의 해제를 주장하는 입장이고, 마약류 비범죄화론은 술이나 담배와 마찬가지로 해롭기는 해도 술이나 담배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듯이 마약류도 이것과 똑같은 차원에서 해금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들은 세계 각국에

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는 상원의원이라든지 법원의 판사, 대학교수, 언론기관의 고급간부 같은 사람들의 다수가 주축이 되어서 벌써 오래전부터 마약해금운동을 전개해 왔고, 정기적으로 마약해금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하고, 홍보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독일 등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도 마약해금운동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이런 마약해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설령 그들의 논조가 맞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마약을 금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마약을 복용하면 심신의 황폐화를 가져온다고 하였으나, 내용적으로 알고 보면 이것은 심신의 황폐화 정도가 아니라 파멸을 초래한다. 최근에는 마약남용자들이 한가지 마약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가지 이상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향이고, 마약을 투약하는 과정에서의 위생문제가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마약을 복용하여 환각상태에 빠지게 되면 판단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위생문제를 소홀히 하게 된다. 마약남용자들은 흔히 여러 사람이 모여 집단으로 투약하는 경우가 많고, 하나의 주사기에 대량의 마약을 넣어서 이것을 돌려가면서 투약하기 때문에 만약 이들 중에 에이즈 등 불치의 전염성 병의 감염자가 있을 경우는 이런 질병의 감염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마약을 복용하고 수사기관에 검거되었거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료기관에 찾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놓은 자료에 의하면 주사법으로 마약을 투약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에 이르는 사람들

이 에이즈에 감염되어서 단시간내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한다³⁵⁾. 바로 이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마약정책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몇가지 논리의 취약점을 이유로 해서 마약을 해금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는, 대형 안전사고 및 인명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마약류 문제가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일부 마약복용자가 인질극을 벌인다거나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약복용자가 대형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거의 없었으나, 미국의 경우를 보면 마약이 널리 사용되어 비행기 조종사나 기관차 운전사가 근무중인 상태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비행기나 기관차를 운행하다가 충돌사고를 일으킬 뻔한 사고가 부지기수로 많고 또한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마약문제를 해금론자들의 주장처럼 그렇게 쉽게 해금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로는 강력범죄의 증가인데, 일부 마약이 과연 강력범죄를 조장 또는 촉발하는 성분을 가지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일부 이견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하는 살인사건 통계를 보면, 우리사회가 산업화 정책 추진 이후로 급속하게 변해 왔으나 한 600건 내외에서 거의 변동이 없다. 미국의 경우 워싱턴 D.C 한곳만 치더라도 연간 마약문제와 관련된 살인사건이 650건을 상회한다고 한다. 그리고 강도나 강간을 저지르고 검거되는 사람들의 소변을 채취해서 분석해 보면, 그 중에서 많으면 70%이상 적게는 50%내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복용한 상태

35) 조병인, 「국내외 마약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정보학교, 1994, p.34.

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또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분석보고 이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범죄를 조장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마약사용을 허용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수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統制政策의 變貌

마약해금론이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면 전체적인 풍조 또는 하나의 흐름은 마약문제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을 여전히 중요시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투자와 대비는 계속하더라도 뭔가 보완적인 조치,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인식하에 새로운 시도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다.

최근에 관찰되거나 느껴지고 있는 중요한 변화의 하나가 지금까지는 수요억제보다는 공급을 억제하는데 많은 나라들이 더 비중을 두어 왔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마약 사용자에게 치료 내지는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데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분야를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문제일 뿐이고,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마약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보다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 마약거래조직의 자금원을 차단하는 문제가 갑자기 새로운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채택해 온 공급억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마약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마약을 만들고 유통시키거나 조직을 만들고 관리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무거운 처벌을 내려 교도소로 보내고 또 한편으로는 마약 자체가 소비자 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약을 압수하여 폐기 처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교도소를 출소하면 재범하는 비율이 높고 또한 이들을 수사당국이 계속적으로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각도에서 마약문제의 해결책에 접근하기 위해 시도하는 방법으로, 마약거래를 담당하는 범죄조직이 없어진다면 마약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마약거래조직의 자금확보 저지와 돈세탁 방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 변화이다. 그리고 돈세탁 방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국제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이 문제는 각 국가간 이해관계로 인하여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第2節 麻藥類 統制政策의 基本方向

마약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수요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수요가 있는 곳에 반드시 공급이 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마약류 통제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원리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것이다. 마약류 문제 해결은 수요를 없애고 공급을 차단해 버린다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인식하에 마약정책을 수립하고 또 필요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요억제, 즉 수요를 막기 위해서 실제로 취해지는 대책으로는 국민을 상대로 마약류의 해악을 널리 알리는 계몽방법이 있고, 남용자를 검거해서 처벌하고, 또 가능한 범위내에서 재남용하지 않도록 치료를 해주는 등

여러가지 수요억제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공급억제 측면에서는, 의약품을 제조한다거나, 군대 또는 전쟁시에 대비해서 부상자에 대한 진통 목적으로 물편을 공급한다든지 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각종 불법유통 내지 제조를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료나 완제품이 해외로부터 국내로 밀반입되는 것을 철저히 봉쇄하고, 국내에서 대마나 아편을 몰래 밀경작하는 것과, 히로뽕을 비롯한 불법마약을 합성하는 것을 단속하며, 그리고 마약류를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행위를 단속을 하고, 또 이런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마약류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는 자에 대해서는 형량을 대폭 강화하여 공급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이런 수요가 공급억제는 어느 한 기관이 일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민간단체 등 각 관심있는 모든 단체들이 조직의 특성에 맞는 역할을 분담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보건당국에서는 치료와 사용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교육당국에서는 계몽기능을 담당하며, 수사당국에서는 검거와 제소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기관에서는 대국민 홍보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또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YMCA, 약사회 등 민간단체에서는 역시 국민 홍보 역할을 분담하며, 그리고 형사정책 연구원, 대학의 관련있는 학과에서는 마약류 대책에 대한 연구문제에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수요와 공급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이 각자 역할 등을 분담하고 있는데, 그 정책의 효과는 어떠했는가? 유감스럽게도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문제를 사회문제나 보건문제로 다루기 보다 범죄행위의 한 형태로 다루고, 정책의 중심은 단속위주로 흘러왔다.

지난 60년대에는 아편이, 70년대에는 대마가, 80년대에는 메스암페타민이

각각 문제시 될 때마다 정부는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등 규제법규를 강화하고 마약류 사범의 검거에 주력하였다. 따라서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려면, 앞에서 열거한 마약과의 전쟁 또는 마약문제에 접근하는 기본인식, 즉 수요와 공급을 차단하면 마약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기본인식부터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약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교육, 예방, 재활대책 강구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마약류 사범을 검거해서 교도소로 보낸다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마약류 사범을 줄일 수 있으나 원천적인 마약류사범 대책이 되지는 않는 것이다. 일단 마약을 남용했던 사람은 다시 마약을 남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가와 사회에서 재남용 방지대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마약류 범죄자에 대한 검거 강화와 함께 병합하여 정책이 수행되어야만 마약류문제 해결을 풀어나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第3節 統制政策의 問題點에 대한 改善方案

1. 藥物規制 法規上の 問題點

우리나라의 약물규제에 관한 법규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법체계상의 문제점이다. 우리나라의 약물규제법규의 특징은 해당 법률이 그 당시의 필요에 따라 자주 개정되어 왔고, 형법,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개별법규로 분산되어 규제되고 있다. 그리고 관련 법규의 입법과정을 보면, 특정 마약류가 사회문제가 된 후 지극히 짧은 기간내에 입법이 이루어져 실제 운용과정

에서는 여러 가지 미비점이 종종 발견된다는 점이다. 예를 든다면, 대마관리법에서는 예비, 음모를 처벌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서는 예비, 음모를 처벌하고 있다. 또 대마의 매매 및 매매알선의 예비 또는 음모는 처벌하면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물질의 매매 및 매매알선의 예비, 음모는 처벌하지 않게 되어 있다. 조제에 관한 규정에서도 대마관리법에서는 규정이 있으나 마약법, 향정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향정법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 수수, 조제, 투약, 교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마약법과 대마관리법에는 미성년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³⁶⁾. 따라서 약물규제에 관한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관련법규를 통일하는 통합입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마약류의 분류에 대하여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마약류에 대한 분류는 위험성의 정도, 약리작용 등을 참고로 하여 분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마약류로 분리된 약품의 종류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누바인」이라는 약품은 기존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펜타조신」보다 환각효과가 3-4배 높은데도 이를 마약류로 지정하지 않았고,³⁷⁾ 「염산날부핀」도 메스암페타민과 같은 강력한 환각작용이 있음에도 이 역시 마약류로 지정해 놓지 않아서 투약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를 복용하는 자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³⁸⁾ 그런 반면에 마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코카엠티나 알칼로이드 등은 약리상 마약으로 보기 어려운 약물이 마약으로 규정되고

36) 장영민, “현행 약물규제 법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pp.75-77.

37) 동아일보, 1994.5.10.

38) 조선일보, 1994.5.10.

있는 경우도 있다.³⁹⁾

따라서, 마약류 분류에 있어서도 위험성, 약리작용정도 등을 참고로 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되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새로운 대체 마약 개발에 대해서도 신속한 연구조사 및 대처로 그에 대한 규제법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셋째, 마약류의 소지와 복용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우리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든다면, 일본에서는 마약류의 위험성에 따라 형벌범위를 차등화하고 있고, 특히 대마를 소량 소지하거나 사용한 때에는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개인 사용의 목적으로 대마를 해외에서 반입하거나 또는 피우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위헌이라고 법원이 판시하면서 가끔 소량으로 피우는 일반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⁴⁰⁾

넷째, 마약류 형벌의 지역적 적용범위에 있어서 세계주의의 적용이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외국의 마약사범이 국내에 들어왔을 경우 현행 우리나라의 마약류 규제법으로는 이를 처벌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해당국과 범죄인인도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마약관련 국제협약을 근거로 범죄인 인도를 해야 하나,⁴¹⁾ 이를 위한 법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범죄인 인도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외에 불법수익몰수제도, 불법자금세탁, 마약류 사범 수사에 대한 법률적 지원 등 법체계상의 문제점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39) 장영민, 전게서, p.82.

40) 조선일보, 1994.4.29.

41) 1961년 협약, 1971년 협약, 1988년 협약에서는 마약류 범죄인이 국내에 들어오고, 그 범죄인이 인도 및 처벌되지 않았다면 범행국가의 법에 관계없이 각국이 당해 범죄인을 형사소추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약물규제에 대한 규제법상의 미비점, 상이점에서 오는 혼란, 외국 법률과의 비교 등 제반문제를 고려하여 통일된 규제법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政策施行上 拘束의 實效性 問題點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손쉽고 빠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은 역시 강력한 단속이다. 그러나 마약류 사범 단속은 마약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의 입수없이는 실효성 있는 단속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는 외국의 정보,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교류 및 정보교환을 통한 마약류 조직범죄에 대한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마약류 사범 및 조직의 계보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져 수사 활용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단 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단속인력의 보강과 수사인력의 국제화 전문화가 필요하다. 날로 지능화, 조직화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현재의 인력과 기술로는 효과적인 수사를 할 수 없으며, 국제적 정보수집 및 수사능력을 보유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수사관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단속장비의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약류 사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발에 필요한 X-ray투시기, 시험키트 등 단속현장에서 신속한 검사가 가능한 첨단장비의 투입과 장비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새로운 단속기법의 개발이다. 그동안 마약류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는 밀매조직원의 제보에 의한 합정수사, 육감적 수사에 의지해 왔다 해

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수사방법은 여러 가지 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적법절차에 따르면서도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수사기법의 개발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統制機關의 業務領域 擴大問題

마약류 범죄는 마약류의 거래에 의한 큰 거래차익으로 인해 국제범죄 조직의 주된 수익원으로 자리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국제마약공급의 경유지로 부상하고 있고, 경유지는 곧 소비국화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처차원에서 통제기관의 업무영역이 확대,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경찰의 기구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경찰청의 마약류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국제협력업무는 경찰청 외사관리실 국제형사계에서 담당하고 있고 마약류관련 수사업무는 경찰청 수사과 수사계 마약담당이 수행하고 있으며, 각 경찰청에서는 형사과에 전담반이 편성되어 있다.

그런데 마약류 범죄는 그 조직이 국제화, 지능화 및 전문화 추세이고, 또한 일반적인 범죄와는 다른 전문적인 대응수단이 필요한 바, 현재 경찰청이 일반 범죄와 동일시하여 마약류 범죄를 다루고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마약류 문제의 해결방안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주요 경찰청 내에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정보와 수사업무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일원적 업무처리가 요구되며, 전문적인 단속활동, 연구 및 교육, 정보 수집, 보안유지가 강화되고, 인터폴 등 국제기구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폭력조직이 마약류 거래에의 개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자금원 및 활동에 대한 감시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기구가 새롭게 구성되어야 하겠다.

국가안전기획부는 93년부터 업무영역을 부가하여 전담부서를 만들고,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거래가 은밀히 이루어지고 고도의 조직성과 전문성, 범죄 조직의 개입, 직접적인 피해의식 부재 등으로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북한이 국제마약밀매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가안전기획부와 같은 국가최고 정보기관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국가안전기획부는 최근, 수집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한 단순한 남용자에 대한 단속이 아니고, 거대한 국제범죄조직, 북한의 국제마약밀매 개입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안전기획부에 마약류 등에 대한 수사권이 마땅히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안기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안기부의 법개정 추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⁴²⁾ 통제기관의 업무영역 확대문제는, 우리나라에서의 마약류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는 선에서 이해되어야 하겠으며, 각 통제기관간의 알력이나 이기주의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약류 문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각 부처간의 알력, 이기주의를 배척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정책에 관련된 각 기관의 역할을 조정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할 범정부적이고도 상설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약물문제는 어느 한 기관의 문제라기 보다는 전국민의 공통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정부내 여러 마약류 통제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설적 전담기구에서는 마약류 통제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의 검토와 성안, 기존정책의 수정, 각 통제기관에서의 실적평가와 업무조정, 마약류 남용의 예방과 통제를 위한 지역적, 국제적 협력의 강화 등 마약류 대책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2) 조선일보, 1995.10.5.

4. 麻藥類 濫用豫防 教育活動의 強化

그동안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약물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영화, 슬라이드, 책자 등을 제작하여 대국민 교육과 계몽,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약물남용이 크게 사회문제화되지 않아서인지 우리 국민들 사이에 약물남용의 심각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

약물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약류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은 약물남용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약물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약물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과 계몽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의한 사회교육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청소년들의 약물남용 실태를 보면 점차 저연령화되고 사용약물도 다양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3년 한국청소년학회가 9~24세의 청소년 11, 103명을 대상으로 한 경험도 조사에서 중학생 8.6%, 고등학생 16.2%, 대학생 12.7%, 근로청소년 20.8%, 소년범죄자 64.0%가 약물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들이 사용한 약물도 부탄가스, 본드, 신경안정제, 마약, 대마, 히로뽕 등 11개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약물중독자 전문치료기관인 경기도 의왕시에 소재하고 있는 계요병원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자 99명중 16세 이하 연령층이 7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³⁾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은 남용의 폐해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43) 경향신문, 1994.10.19.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약물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현실 판단력이나 자제력을 상실, 비행, 범죄 등 사회문제를 유발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중·초등학교 과정에는 약물교육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중·고등학교는 체육과목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고 있으나 중·고 과정을 전부 합해도 교육시간이 6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 무직자, 유흥업소종사자, 운전기사 등 약물남용 가능성이 큰 사람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비중있게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교육내용도 단순히 약물의 유해성만을 강조하거나 일방적인 지식전파용이 아니라, 약물남용자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 치료까지 도와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내용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약물남용에 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관련사업예산을 현실적으로 증액시켜 내실적이고 효율적인 홍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회단체, 종교단체, 자선단체, 언론기관 등 민간단체들의 약물남용퇴치를 위한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민들 사이에도 범국민 차원의 약물퇴치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5. 治療와 再活對策 問題

정부는 1990년 7월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규정」을 제정, 공포하여 마약중독자에 대해서 처벌보다는 치료보호를 통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치료보호규정의 주요내용으로, ① 전문 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②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③ 중독자가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④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병중독자에 대해서는 전문치료기관 또는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중독자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⁴⁴⁾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류 전문병원으로는 경남 창원군 부곡면에 있는 200개 병상규모의 국립부곡정신병원이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고, 마약사범을 치료하는 병원으로 17개 국공립병원을 포함한 22개 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시설 및 장비의 미비와 전문치료인력의 부족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정된 치료기관에서의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도 환자를 치료한다기 보다 의사능력을 상실한 환자를 진정시키거나, 금단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를 일시 수용하는 수용시설로서의 역할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들 마약류 사범에 대한 전문적, 의학적, 사회복지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치료보호제도는 마약류 남용자 내지는 중독자들이 치료시설에 대한 불신과 마약류 남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중심의 뿌리깊은 관행으로 아직까지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⁴⁵⁾ 예컨대, 마약사범이 적발되면 치료보호대상자일지라도 중독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는 한 우선 교도소에 수감하고 있으며, 아직 노출되지 않은 마약류 남용자들도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발적인 치료를 기피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가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의사는

44) 이은모, 「약물범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pp.137~138.

45) 김상희, 「마약류 통제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1992, p.271.

마약류 남용자에 대한 신고의무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국가에서 마약류 남용자의 치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치료보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미한 마약복용자나 초범자, 치료를 원하는 마약류 남용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대폭 완화하여 중독자가 자발적으로 치료에 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특정한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치소 및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마약사범 중에는 교정시설내의 치료시설 미비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교화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정시설 내에서의 재활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개발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6. 國際協力 強化問題

마약류 범죄의 국제화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부는 최근 마약류나 그 원료가 주로 외국에서 밀수입되는 실정과 국제마약조직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각종 마약류 관련 국제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가, 국제 마약류 밀거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상호교환하고 있으며, 또한 출입국감시체제 등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국제적인 동향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마약류 범죄가 더욱 조직화, 국제화될 것으로 예견되는 이 시점에서 각국의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과의 정보교환은 물론 공조수사체제의 확립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의 법제를 국제협약과

비등하게 법제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국제 마약류 통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유엔 마약위원회(CND),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유엔약물통제본부(UNDCP) 등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효과적인 통제정책 수립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형사사법 공조체제의 확대로 관련국들과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및 범죄인 인도협정의 체결로 마약류 범죄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도 공동 대응해야 하고, 점차 국제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의미에서도 국제협력문제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第6章 結 論

마약류 문제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최대의 책무이기도 하다. UN이 1990년대를 「마약퇴치 10개년」으로 정하고 마약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마약문제가 어느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마약류 문제가 우려할 만한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최근 몇 년간의 동향과 추세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선진국들에 비하여 비교적 때늦게 마약류 문제로 심각한 도전을 받는 우리로서는 마약류 통제정책의 향후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먼저 마약류의 수용을 거부하는 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마약류 통제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약류 남용의 해악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이해를 갖게 하고, 마약류 남용을 근절하고자 하는 노력에 전 국민의 합의와 협조를 얻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없다면 여타의 모든 정책이 실패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부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국민들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이고 있으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마약정책은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마약류 남용문제를 형사사법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단속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최근에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마약류 문제의 예방과 교육, 그리고 치료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마약류 문제의

예방과 치료, 재활부분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마약류 정책은 검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히 단속위주의 정책으로 흐르는 것이 당연할 결과라 하겠다.

마약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마약정책 또는 마약문제에 접근하는 기본인식부터 바뀌어야 할 것이다. 우선 마약류의 수요와 공급 만을 차단하면 마약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정책입안자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두번째로는 마약류 남용자들을 무조건 범죄자 취급하는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현대사회가 가져온 병폐의 피해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약류 남용자들을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자가 아닌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들에 대한 치료와 재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마약류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마약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마약류 사범의 근절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단속이 근본적인 다른 해결책들과 병행되어야만 마약류의 근절을 위한 대책에 있어서 효율적인 해결방법이 될 것이다.

강력한 단속과 효과적인 치료와 재활대책을 병행하여 성공한 경우로는, 지난 1949년 중국정부가 수립된 후 3년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아편왕국」이라는 오명을 벗게 하였던 중국의 마약정책을 들 수 있다. 당시 중국정부는 1천만명으로 추산되던 마약류 중독자들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사회개혁의 일환으로 아편근절 캠페인을 전개함과 동시에 홍보와 교육, 아편밀수, 밀매자의 엄중한 단속과 처벌, 아편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에 대한 대책을 병행하여 실시, 구시대로부터 물려 받았던 아편중독의 악습을 뿌리뽑을 수 있었다. 물론 그 밑바탕에는 국민들의 광범

위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약물통제정책은 어느 수준에 와 있으며 그 문제점과 대응책은 무엇인가? 그동안 마약류 통제정책이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마약문제에 대한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했고, 마약정책이라는 것들이 완전히 낭패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약물통제정책의 근원적인 문제해결과 정책수행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강력한 단속과 병행하여 홍보, 교육, 재활 등의 정책도 동등한 가치를 두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향후 약물남용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청소년층의 예방교육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 청소년층에 대한 우리의 약물교육 수준은 미국의 초기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⁴⁶⁾ 그러므로 미국이 청소년들에 대한 약물교육이 실패한 점을 상기하고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물교육 내용을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약물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에 대한 몇가지 대책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약물규제법규에 대한 정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물남용 규제법으로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등이 있는데 이를 하나로 통합시켜 통일된 법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형벌규정에 대한 처벌조항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도 법개정이 이루어져야겠다. 또한 규제약물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적용이 필요하다. 유엔이나 선진국에서 규제하지 않는 약물일지라도 우리나라에서 그 약물이 남용될 경우 법적 규제를 하여야 한다. 특히 그 약물이 습관성과 중독성이 있고 금단증상이 있을 때에는 더욱 그렇다(날부민 등의 경우).

둘째, 약물남용 예방교육의 강화이다. 향후 약물남용 가능성이 있는 사

46) 주왕기, 「본드, 마리화나, 필로폰」, 1995, p.162.

람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비중있게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층에 대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에서의 약물남용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약물교육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학교 생활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2시간 정도의 약물교육으로는 그들이 학생들의 약물교육을 담당할 수가 없다. 때문에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담당할 교사들을 교육시키고 양성할 수 있는 연수과정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약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강화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은 의약업계들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비록 합법적인 약물(벤조디아제핀, 텍스트로 메톨판, 지페프를, 날부민 등)이라 할 지라도 청소년들이 비의학적으로 약물을 남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할 때에는 직업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의약인들을 대상으로 약물남용 예방교육과 함께 직업의 윤리성 교육도 아울러 강화되어야 하겠다.

셋째, 치료와 재활대책시설 및 전문의료인의 확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약물남용자에 대한 전문병원으로는 최근에 세워진 국립부곡정신병원이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약물사범의 증가추세에 비추어 치료시설이 너무나 빈약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약물중독자 치료를 위한 전문의료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는 데 있다. 정부가 해외파견교육 등을 통하여 이 분야의 전문인 양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약물중독자에 대한 재활시설 확충과 재활단체의 설립도 적극 검토되어야 하겠다.

넷째, 약물남용 억제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및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의 설립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약물남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회조

사, 법제정 및 개정, 교육과 계몽, 치료와 재활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한 연구는 물론 약물남용에 관한 지식과 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환자에 대하여 정확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정부차원이나 민간차원의 연구기관이 하나도 없다. 국가의 장래와도 관련지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사업은 정부가 선진국과 같이 연구소를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연구재단을 정부의 투자나 후원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각 통제기관의 업무협조와 기관간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하에 마약류정책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두고 행정통제에 의해 각 부처간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다섯째, 국제협력의 강화와 다른 국가와의 정보, 수사공조체제 확대문제다. 약물남용문제는 이제 국제간의 협력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해 있다. 특히 국제범죄조직의 개입으로 더욱 국제간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우리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 마약류 생산, 밀매국으로 부상하고 있어, 우리는 이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국제 마약류 통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유엔의 마약류 관련 산하기구 및 국제 마약류 단체들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 등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효과적인 통제정책 수립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 외 언론이나 민간단체에서도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계속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마약류 퇴치 국민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하여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國內文獻>

관세청, 「1992년도 마약밀수 동향과 세관대책」, 1993.

「최근의 마약밀수 동향과 세관대책」, 1994.

「마약의 종류별 특성 및 밀수동향」, 1991.

국가안전기획부, 「국제 마약류 밀매와 통제」, 1993.

국방과학수사연구소, 「마약류 사범 수사실무」, 1994.

국제과학문화연구소, 「마약류 범죄의 동향과 수사요령」, 1993.

김광일, 「마약환자의 생태」, 대한의학협회지, 1969.

김상희, “마약류 통제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김선복, “현행 마약류 규제법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김영재, 「마약류 현황과 대책」, 검찰 71호, 1978.

김익기, “약물남용 사범과 공급사범의 비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 백서」, 1993.

대검찰청 마약과 「전국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 결과보고」, 1989.4.

문영호,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의 실태와 전망”, 1992.

「조직폭력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민병현, 「마약류 사범의 현황과 대책」, 법무연수원, 1989.

보건사회부,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대책」, 1992.

「청소년의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실태 및 예방」, 1994.

부산지방검찰청, 「마약류 사범의 실태와 수사」, 1988.

손경애,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대책」, 현대사회연구소, 1992.

- 심영희, “약물남용 실태와 통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 유인창, “마약류 사범의 실태와 대책”, 청주대 석사학위 논문, 1991.
- 유창중, 「마약류 사범의 실태와 대책」, 법무연수원, 1989.
- 이근후, “약물남용의 치료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 이연수, “메스암페타민 사범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89.
- 이은모, “약물범죄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1991.
- 장영민, “현행 약물규제 법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 장정배, “마약류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정책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1994.
- 정선태, “마약류 사범의 실태와 대책”,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1.
- 조병인, 「국내외 마약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정보학교, 1994.
- 조정희, “한국사회의 마약류 범죄와 국가통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9.
- 주왕기, 「본드·마리화나·필로폰」, 박영률 출판사, 1995.
- 진민범, “국제 마약류 밀거래실태와 우리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 논문, 1994.
-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대책」, 1993.
- 허은도, “성인남녀의 약물남용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 황진수, “한국 마약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한성대 논문집, 1994.

<外國文獻>

Leccess, Arthur P, 'Durg and Society:Behavioral Medicines and Abusable', Englewood Cliffs, NJ:Prentice-Hall, 1991.

REKENDALL Secretary General of ICPO, "Drug Control:Policies and Practices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Bulleton on Narcotics', Vol.XLIV, No.1, 1992.

Report of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U.S. Department of Start,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 1991.

中島治療, '戦後 日本の 薬物防止対策', 警察學論集, 1988.

< 定 期 刊 行 物 >

경향신문, 94.10.19일자.

동아일보, 94.5.10, 95.10.3일자.

조선일보, 94.4.29, 94.5.10, 94.5.23, 95.10.5, 95.10.7, 96.4.17일자.

TIME, Jill Smolowe, A Chat about Drugs, 1990.2.19.

Abstract

A Study On Drug Control Policies in Korea

Koh, Sung - Gun

Major in Public Administration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 Sung University

As drug abuse became a global concern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countries around the world established various mechanisms or strengthened existing ones to cope with the problem. Drug abuse became a global concern when the international crime organizations got involved,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the United Nations as its head, is cooperating to crack down on drug abuse. In 1991, the UN declared the years until 2000 to be the decade to crack down on drug abuse and June 26th, the International Day Against Drug Abuse and Illicit Trafficking. As such, the Un is making strenuous efforts to save humankind from the scourge of substance abuse.

In Korea, an international conference to combat drug abuse was held in June, 1995 in Kangwon Province. Some of the important

issues discussed were trends in drug-related crimes in individual countries, measures to control raw materials and promoting regional cooperation. As a means of promoting regional cooperation, the participants agreed to exchange data on legislation and investigation experiences concerning money laundering and drug trafficking. They also decided to establish a data base and a computer communications network. The conference, first initiated by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in 1989, is held every quarter with drug control administrators from 11 countries which consist of China, Japan, Thailand, the Philippines, Malaysia, New Zealand, Australia,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Germany and Korea. It has become a consultative body in which the participants exchange information and discuss ways to cooperate in their investigation. In addition, to commemorate the International Day Against Drug Abuse and Illicit Trafficking, an extended conference is held in June in which related high-level and working-level officials take part. Such meetings attest to the fact that substance abuse has indeed become a global concern.

So what measures is Korea taking to eradicate drug abuse? In Korea, authorities severely crack down on and punish drug users, and it is true that such measures resulted in some short-term success. Consequently, however, drug prices in Korea rose to thirty times those of the international market.

This, in addition, has enticed international drug cartels to look to Korea as their next target. Furthermore, because Korea's antinarcotics programs focus on punishing the users, drug addicts are perceived as criminals rather than people who need help. The general consensus is that prevention of drug use by education, rehabilitation programs and treatment of addicts leave much to be desired. Needless to mention, the lack of budget to hire professional help, purchase scientific equipment and establish various programs bodes ill in the fight against drugs.

To overcome such difficulties and eliminate drug abuse, the following measure should be taken as soon as possible:

First, a government body should be established to efficiently deal with the problem of drug abuse. This body would coordinate antinarcotics efforts made by the various institutions and establish an integrated policy to fight drugs on a government level.

Second, there should be a greater emphasis on education in order to prevent drug abuse. Such education should take place not only in the homes and schools but also in the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ird, current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programs should be strengthened. To this end, adequate number of treatment facilities and professionals should be secured to treat the patients. Punishment

should be reduced for those who voluntarily seek treatment so that they may be encouraged to do so. In addition, treatment programs should be established within schools.

Fourth, in the situation that North Korea is seriously involved in drug trafficking,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drug issue as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In this context, international cooperation should be reinforced, in particular, in the areas concerning the exchange of information, joint-investigations and extradition of criminals.

Fifth, current legislation should be revamped in order for the government to proactively deal with the rapidly evolving drug-related crimes. In this regard, the passage of the special law on prevention of illicit drug trafficking in the regular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1994 seems most appropriate.

Last but not least, there should be an acknowledgement that drug abuse has indeed surfaced as one of the most pertinent issues to be solved in our times. There should also be unwavering support from the public so that the government will be able to proactively, and with commitment, deal with the issue. What is most important in drawing up Korea's future drug control policies is that these policies create an environment that will discourage the public from taking up the habit in the first place.